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선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 출 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 구 기 간 : 2017년 12월 18일 ~ 2018년 2월 17일

연구책임자 조현정

참여연구원 이강수

김진희

노유진

박지혜

정동욱

목 차

1. 서론

| | |
|------------------------|---|
| 1-1. 목적 | 1 |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 |
| 1-3. 추진방법 및 전략 | 3 |

2. 기존의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추진 체계

| | |
|--|-----|
| 2-1. 점검·평가 대상 기관 | 4 |
| 2-2. 점검·평가 대상 과제 | 6 |
| 2-3. 평가 지표 | 8 |
| 2-4. 평가단 구성 | 4 |
| 2-5. 평가 절차 | 5 |
| 2-6. 시행계획 평가체계의 개선 양상 | 12 |
| 2-6-1. 2012년 결과에 기초한 2013년 평가체계 개선 | 1 2 |
| 2-6-2. 2013년 결과에 기초한 2014년 평가체계 개선 | 8 2 |
| 2-6-3. 2015년 결과에 기초한 2016년 평가체계 개선 | 9 2 |
| 2-6-4. 2016년 결과에 기초한 2017년 평가체계 개선 | 6 3 |

3. 타 부처의 2016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체계

| | |
|------------------------------------|-----|
| 3-1. 기초·기반관련 분야 | 42 |
| 3-1-1. [과기부]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 2 4 |
| 3-1-2. [과기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 0 5 |

| | |
|---|-----|
| 3-2. 기술 분야 | 6 |
| 3-2-1. [과기부]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 6 |
| 3-3. 종합검토 및 시사점 | 6 |
| | |
| 4.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선방안 | |
| 4-1. 점검평가 대상과제 | 7 |
| 4-2. 점검평가 지표개선 | 8 |
| 4-3. 점검평가 체계개선 | 9 |
| 4-4. 점검평가 결과의 실효성 확보방안 | 9 |
| | |
| 참고문헌 | 71 |
| | |
| 부록 | |
| [부록 1] '15년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 5 |
| [부록 2] '16년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 21 |
| [부록 3] '17년 중앙부처 추진과제 현황 | 11 |
| [부록 4] '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자료 양식 | 441 |
| [부록 5] '17년 평가지표 및 점검 기준 | 4 |

표 목 차

| | |
|---|-----|
| [표 1] 2012-2016년의 점검·평가 대상기관 | 5 |
| [표 2] 2012-2016년 정책분야 구분에 따른 평가대상과제 분포 | 7 |
| [표 3]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 8 |
| [표 4] 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및 배점 | 9 |
| [표 5]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및 배점 | 9 |
| [표 6] 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및 평가비중 | 0 1 |
| [표 7]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및 평가비중 | 1 1 |
| [표 8]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 및 배점 | 2 1 |
| [표 9]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및 배점 | 2 1 |
| [표 10] 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및 평가비중 | 3 1 |
| [표 11]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및 평가 | 3 1 |
| [표 12] '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진행경과 및 세부절차 | 6 1 |
| [표 13]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진행경과 및 세부절차 | 7 1 |
| [표 14] '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진행경과 및 세부절차 | 8 1 |
| [표 15] '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진행경과 및 세부절차 | 0 2 |
| [표 16] '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진행경과 및 세부절차 | 1 2 |
| [표 17] 정부업무평가 배점 현황 | 4 2 |
| [표 18] '12년도 평가지표 대비 주요 변경사항 | 4 2 |
| [표 19] '12-'13년도 평가과정 변경사항 | 6 2 |
| [표 20] 평가지표 변경 내용 요약 | 4 3 |
| [표 21]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 개선(안) 세부 내용 | 4 3 |
| [표 22]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개선(안) 세부내용 | 5 3 |
| [표 23] 2016년과 2017년의 평가체계 차이 비교 | 7 3 |
| [표 24] 2016년과 2017년의 평가지표 차이 비교 | 8 3 |
| [표 25]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법 비교 | 8 3 |
| [표 26] 지식재산기본법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 | 9 3 |
| [표 27] 2013-2016년의 점검·평가 대상 기관 | 2 4 |
| [표 28]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의 평가지표 | 4 4 |
| [표 29] 2013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5 4 |
| [표 30] 2015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7 4 |

| | | | |
|--------|------------------------------------|---|---|
| [표 31] | 2016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8 | 4 |
| [표 32] | 2013년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2 | 5 |
| [표 33] | 2014년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3 | 5 |
| [표 34] | 2015년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3 | 5 |
| [표 35] | 2016년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4 | 5 |
| [표 36] | 2017년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4 | 5 |
| [표 37] | 정부 기초·원천연구비 투자 비중 | | 6 |
| [표 38] | 2012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절차 | 0 | 6 |
| [표 39] | 2013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절차 | 1 | 6 |
| [표 40] |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의 평가지표 | 4 | 6 |

그림목차

| | |
|----------------------------|----|
| [그림 1] 전문가 자문단 구성 개요 | 3 |
| [그림 2] 정책평가단 구성방안 | 51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개선방안 마련

1. 서론

1-1. 목적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실효성 제고
 - ※ 추진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 관련 정부부처 시행계획 수립 시, 업무 추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부처별 주요정책의 지식재산 연계 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현지 지원 강화,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
- IP와 R&D간 연계 정책 확산, 맞춤형 법률 자문 등 기업 대상 IP 지원 확대, 고품질 IP 창출환경 조성 등 지식재산 기반 확충에 기여
- 지역의 경우,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지재권 정책 수립, IP 전담조직 및 예산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 지역 IP 기반 확충을 위한 방향 제시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기존에 시행된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추진 체계 분석
 -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기간('12~'16)에 시행된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기관 및 과제, 평가 절차, 평가단 구성, 평가 지표 연혁 정리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기간('17~'21)에 시행된 시행계획 점검·평가 추진 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 검토

○ 타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범부처) 점검·평가 체계 분석 및 비교·검토

-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 과학기술 분야의 범부처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점검·평가 체계 조사 및 분석
- 나노기술발전 시행계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시행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등 특정한 기술분야의 범부처 시행계획 점검·평가 체계 조사 및 분석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

- 평가 대상 기관 및 과제 선정 방법의 효과적 추진 지침 발굴
-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정책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 절차(일정 등) 등 평가 체계 개선 방안 도출
- 중앙 정부와 지자체별로 주요 차이점 및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개발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정부 예산편성 등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다각화 방안 검토
- 개선된 점검·평가 수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 체계 정비 및 방안 제시

1-3. 추진방법 및 전략

- 과업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을 실시하여 현장 입장에서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
 - 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 실무 담당자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
- 기존 점검·평가 수행 체계 검토, 타 부처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평가 추진 체계 비교 등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
- 대학, 출연연, 전문기관, 변리사, 기술경영·경제 전문가, 관계자 등 회의 및 의견 조화를 통한 자문



[그림 1] 전문가 자문단 구성 개요

2. 기존의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추진 체계

2-1. 점검·평가 대상 기관

- **(2012년)**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점추진과제 관련 기관인 17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 * 2012년 시행계획 당시 부처 기준
- **(2013년)**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점추진과제 관련 기관인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 ※ 2013년 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점검·평가 대상 기관 다수 변경됨
 -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추가됨
- **(2014년)**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점추진과제 관련 기관인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 **(2015년)**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점추진과제 관련 기관인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 **(2016년)**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과제 소관 기관인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표 1] 2012-2016년의 점검·평가 대상기관

| 년도 | 구 분 | 기 관 명 |
|------|-----------------------|--|
| 2012 | 관계 중앙행정기관 (17개) |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물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세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
| | 광역 지방자치단체 (16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2013 | 중앙행정기관 (15개)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관세청 : '12년도 우수과제 단일추진 기관으로 '13년도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 |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 2014 | 중앙행정기관 (15개)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
| |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 2015 | 중앙행정기관 (16개)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세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
| |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 2016 | 중앙행정기관 (18개)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세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
| |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2-2. 점검·평가 대상 과제

- **(2012년)** 중점추진과제에 포함된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선정: 총 21개 과제
- **(2013년)** 새정부 국정과제 및 201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8대 중점 추진 과제와 관련된 성과목표 단위의 평가과제 선정: 총 35개 과제
- **(2014년)** 지식재산 국정과제 및 2014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7대 중점추진 과제와 관련된 성과목표 단위의 평가과제 선정: 총 35개 과제
- **(2015년)** 지식재산 국정과제 및 2015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8대 중점추진 과제와 관련된 성과목표 단위의 평가과제 선정: 총 36개 과제
 - (성과관리) 2014년도 우수과제에 대한 평가는 면제하고, 개선필요 과제는 연속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2016년)** 지식재산 국정과제 및 2016년 지식재산 시행계획 8대 중점추진 과제와 관련된 평가과제 선정
 - (성과관리) 2015년도 우수과제에 대한 평가는 면제하고, 개선필요 과제는 연속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우수과제

- (중앙행정기관, 4개) :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 기술가치평가 투자 확대,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이용 촉진,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 창출
- (지방자치단체, 3개) : 지식재산 사회 기반 확립, 지식재산 보호 수준의 선진화, 창조형·개방형 지식재산 창출환경 조성

※ 개선필요과제

- (중앙행정기관, 3개) : 소프트웨어 정품 이용문화 조성(문체부),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교육부), 생물자원 발굴 확보와 지식재산의 창출 지원(해수부)
- (지방자치단체, 3개)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및 창출 선진화(충북), 지식재산 수익창출체계 고도화(전남),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관리 강화(경북)

- **(정책분야)** 기관별 평가가 아닌 정책분야별 평가임을 고려하여 **5대 정책 분야별 평가과제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선정**

[표 2] 2012-2016년 정책분야 구분에 따른 평가대상과제 분포

| 년도 | 정책분야 구분 | | | | | 지자체 |
|------|---------|----|----|----|-------|-----|
| | 창출 | 보호 | 활용 | 기반 | 신지식재산 | |
| 2012 | 4 | 5 | 4 | 3 | 5 | - |
| 2013 | 2 | 4 | 5 | 3 | 4 | 17 |
| 2014 | 2 | 4 | 4 | 3 | 5 | 17 |
| 2015 | 4 | 4 | 4 | 3 | 4 | 17 |
| 2016 | 4 | 4 | 4 | 5 | 4 | 17 |

- **(평가과제수)** 평가부담을 고려하여 기관별 평가과제 수는 1개가 원칙
 - ※ (예외) 중점추진과제 관련 비중이 높은 3개 기관 [2012: 문체부(2개), 지경부(2개), 특허청(2개)] / 2013-2016: 미래부(2개), 문체부(2개), 특허청(2개)
- **(중앙행정기관)** 각 기관에서 추진한 중점추진과제 중 관련 정책분야, 중요도, 성과지표, 예산 투입비중 등을 고려하여 평가과제 선별
 - ※ 2015*, 2016년에는 성과목표 단위로 평가과제 선별
 - *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교육부), 지식재산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문체부) 과제는 전략목표 단위 평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년도에 따라 지자체별 과제 선정이 다름
 - 2012년: 중점추진과제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관련,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과제를 대상으로 16개 광역 지자체 공통 평가
 - 2013-2014년: 중점추진과제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관련, 지자체별 역점추진과제 1개를 자율적으로 선정
 - 2015년: 중점추진과제 ‘지역 역량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와 관련하여 지자체별 역점추진과제 1개를 전략목표 단위로 자율적으로 선정

※ 지자체는 기관별 추진계획 전체가 시행계획의 중점추진과제에 포함되며, 지자체의 전략목표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목표의 체계상 단위가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상향 조정

- 2016년: '지역 특화형 지식재산 정책 발굴'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역점추진과제 1개를 전략목표 단위로 자율 선정

※ 지자체는 기관별 추진계획 전체가 시행계획의 중점추진과제에 포함되며, 지자체의 전략목표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목표의 체계상 단위가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상향조정

2-3. 평가 지표

□ 2012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의 기본체계를 활용하되, 가중치 및 세부 측정방법은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특수성을 고려
- 최초 시행·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정책성과뿐만 아니라, 정책기반 확보 등 정책형성·집행 관련 요소도 균형 있게 반영하여 평가

[표 3]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
| 정책 형성 (30) | 1. 계획수립의 적절성(15) | 1-1. 사전분석·의견수렴의 충실성(5) |
| |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2. 정책기반 확보 수준(15) | 2-1. 추진체계의 충실성(5) |
| | | 2-2. 자원 배분의 적정성(10) |
| 정책 집행 (35) | 3. 추진과정의 효율성(25) | 3-1. 추진일정의 충실성(10) |
| | | 3-2.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10) |
| | | 3-3.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5) |
| | 4. 정책확산 노력 수준(10) | 4-1. 정책 소통·홍보·교육의 충실성(10) |
| 정책 성과 (35)) | 5. 정책성과 및 효과성(35) | 5-1. 성과목표 달성도(20) |
| | | 5-2. 정책 효과성(15) |

□ 2013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의 기본체계를 활용하되, 가중치 및 세부 측정방법은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특수성을 반영

※ 2012년과 동일

- 2013년부터 지자체의 정책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분리하여 평가

[표 4] 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및 배점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
| 정책형성 (30) | 1. 계획수립의 적절성(15) | 1-1. 사전분석·의견수렴의 충실성(5)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2. 정책기반 확보 수준(15) | 2-1. 추진체계의 충실성(5) 2-2. 자원 배분의 적정성(10) |
| 정책집행 (30) | 3. 추진과정의 효율성(20) | 3-1.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10) 3-2.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 | 4. 정책확산 노력 수준(10) | 4-1. 정책 소통·홍보·교육의 충실성(10) |
| 정책성과 (40) | 5. 정책성과 및 효과성(40) | 5-1. 성과목표 달성도(20) |
| | | 5-2. 정책 효과성(20) |

[표 5]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및 배점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
| 정책형성 (35) | 1. 계획수립의 적절성(15) | 1-1. 사전분석·의견수렴의 충실성(5)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2. 정책기반 확보 수준(20) | 2-1.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5) 2-2. 지자체 정책차별성(15) |
| 정책집행 (30) | 3. 추진과정의 효율성(20) | 3-1.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10) 3-2.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 | 4. 정책확산 노력 수준(10) | 4-1. 정책 소통·홍보·교육의 충실성(10) |
| 정책성과 (35) | 5. 정책성과 및 효과성(35) | 5-1. 성과목표 달성도(15) |
| | | 5-2. 정책 효과성(20) |

□ 2014년

-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의 연속성 유지
- 지자체의 정책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분리하여 평가
- **(성과관리 강화)** 정책 개선성과 우수성 지표를 신설하여 정책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성과환류체계 구축
- **(가점)** 전년도 평가결과 '향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성과가 우수할 경우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표 6] 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및 평가비중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
| 정책형성 (30) | 1. 계획수립의 적절성(15) | 1-1. 사전분석·의견수렴의 충실성(5) |
| |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2. 정책기반 확보 수준(15) | 2-1. 추진체계의 충실성(5) |
| | | 2-2. 자원 배분의 적정성(10) |
| 정책집행 (30) | 3. 추진과정의 효율성(20) | 3-1.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10) |
| | | 3-2.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 | 4. 정책확산 노력 수준(10) | 4-1. 정책 소통·홍보·교육의 충실성(10) |
| 정책성과 (40) | 5. 정책성과 및 효과성(40) | 5-1. 성과목표 달성도(20) |
| | | 5-2. 정책 효과성(20) |
| 가점(5) | 정책 개선성과(5) | 정책 개선성과 우수성(5) |

[표 7]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및 평가비중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
| 정책형성 (35) | 1. 계획수립의 적절성(15) | 1-1. 사전분석·의견수렴의 충실성(5) |
| |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2. 정책기반 확보 수준(20) | 2-1.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5) |
| | | 2-2. 지자체 정책차별성(15) |
| 정책집행 (30) | 3. 추진과정의 효율성(20) | 3-1.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10) |
| | | 3-2.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 | 4. 정책확산 노력 수준(10) | 4-1. 정책 소통·홍보·교육의 충실성(10) |
| 정책성과 (35) | 5. 정책성과 및 효과성(35) | 5-1. 성과목표 달성도(15) |
| | | 5-2. 정책 효과성(20) |
| 가점(5) | 정책 개선성과 | 정책 개선성과 우수성(5) |

□ 2015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의 기본체계를 활용하되, 가중치 및 세부 측정방법은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특수성을 반영
- **(단계별 평가)** 평가체계를 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성과 단계별로 구성하여 체계적 평가를 실시
- **(분리평가)** 지자체의 정책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분리하여 평가
- **(성과관리 강화)** 개선성과우수성 지표를 신설하여 정책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성과환류체계 구축

< '14년도 평가지표 대비 주요 변경사항 >

- (지표신설) ① 평가결과의 환류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개선성과 우수성' 지표 신설

[표 8]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 및 배점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
| 정책형성 (30) | 1.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 | •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10) |
| | |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 •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10) |
| 정책집행 (30) | 2. 정책추진 효율성 | •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10) |
| | 3. 정책 모니터링 | •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10) |
| 정책성과 (40) | 4. 정책성과 및 환류 | •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 | | • 정책목표 달성도(20) |
| | | • 정책 효과성(15) |
| | | • 개선성과 우수성(5) |

[표 9]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및 배점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
| 정책형성 (35) | 1.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 | •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10) |
| | |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 •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10) |
| | | • 지자체 정책차별성(5) |
| 정책집행 (30) | 2. 정책추진 효율성 | •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10) |
| | 3. 정책 모니터링 | •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10) |
| 정책성과 (35) | 4. 정책성과 및 환류 | •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 | | • 정책목표 달성도(15) |
| | | • 정책 효과성(15) |
| | | • 개선성과 우수성(5) |

□ 2016년

- 전년도에의 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틀을 유지
- 기존 평가지표를 통합·간소화하고, 지표별 평가항목을 보완
- **(지표통합)** 지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 지표 통합
- **(평가항목 보완)** '개선성과의 우수성' 지표에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와 함께 자체평가 및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성과도 포함

[표 10] 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및 평가비중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
| 정책 형성 (30) | 1.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 | •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10) |
| | |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 •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10) |
| 정책 집행 (30) | 2. 정책추진 효율성 | • 교육 및 정책 소통,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20) |
| | 3. 정책 모니터링 | •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 정책 성과 (40) | 4. 정책성과 및 환류 | • 정책목표 달성도(20) |
| | | • 정책 효과성(15) |
| | | • 개선성과 우수성(5) |

[표 11]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및 평가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
| 정책 형성 (35) | 1.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 | •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10) |
| | |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 •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10) |
| | | • 지자체 정책차별성(5) |
| 정책 집행 (30) | 2. 정책추진 효율성 | • 교육 및 정책 소통,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20) |
| | 3. 정책 모니터링 | •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 정책 성과 (35) | 4. 정책성과 및 환류 | • 정책목표 달성도(15) |
| | | • 정책 효과성(15) |
| | | • 개선성과 우수성(5) |

2-4. 평가단 구성

-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전문위원, 평가전문가 등으로 「정책평가단」 구성
 - (2012년)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지자체 6개 분과 총 30명
 - (2013년)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지자체 6개 분과 총 28명
 - (2014년)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지자체 6개 분과 총 28명
 - (2015년)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지자체 6개 분과 총 29명
 - (2016년)
 - (평가위원) 지재위 민간·전문위원, 평가·컨설팅 전문가, IP경영 컨설팅 전문가 등 총 23명 위촉
 - * 정책평가단장 (김호원 전 특허청장)
 - (평가단 구성) 5대 정책분야 및 지자체 평가를 위한 6개 분과*로 구성
 - *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지자체
 - 분과별 평가위원은 해당 정책분야 평가과제 수를 고려하여 위촉
 - * 단, 평가기관이 17개인 지자체 분과는 1인당 주 2~3개 과제씩 감안하여 7명 위촉
 - (조정회의) 분과위 평가 결과 종합·조정을 위해, 정책평가단장 주재, 6개 분과위원장 참여로 운영되는 정책평가단 조정회의 구성
 -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3명(정책평가단장 1명 포함)으로 「정책평가단」 구성



[그림 2] 정책평가단 구성방안

2-5. 평가 절차

□ 2012년

- 정책평가단 평가위원이 각 기관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정성평가 실시
- 정책평가단 1차 평가 완료 후 평가단장 및 6개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평가 등급 결정
 - * '12년은 기본계획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평가결과를 등급화(우수-보통-개선필요, 3등급) 하고, 기관별 종합평정은 실시하지 않음
- 정책평가단이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자료를 일차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고, 평가결과(안)을 작성
 - 평가결과(안)을 토대로 정책평가단* 조정회의에서 우수·개선필요 사례 선정 등 평가결과 조정
 - * 정책평가단 조정회의는 정책평가단 단장과 6개 분과의 분과장으로 구성
- 평가결과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
- 관련기관 개선계획 수립·제출
- 개선계획 이행사항 점검
- 평가 경과
 - (1차 서면평가) 정책평가단 분과별 서면평가(2013.03.15.~03.25.)

- (2차 조정회의) 정책평가단 조정회의 개최(2013.04.08.)

[표 12] '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진행경과 및 세부절차

| 구분 | 세부 내용 | 일정 | 비고 |
|------------------|---|------------|-------|
| • 평가방향 및 세부지침 수립 | · 「'12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계획」 제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 '12.4월 | 지재위 |
| | ·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지침」 수립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12.12월 | 지재위 |
| • 시행계획 평가 | · '12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및 자료 보완 | ~'13.2월 | 관계기관 |
| | · 정책평가단의 실적보고서 1차 평가 | ~'13.3월 | 정책평가단 |
| | · 정책평가단 조정회의 | '13.4.8 | 정책평가단 |
| • 평가결과 확정 및 피드백 | · 12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관계기관 송부 | ~'13.6.28. | 지재위 |
| | · 관련 기관 개선계획 수립·제출 | ~'13.7월 | 관계기관 |
| | ·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 수시 | 지재위 |

□ 2013년

- 정책평가단 평가위원이 각 기관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정성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정책평가단 1차 평가 완료 후 평가단장 및 6개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평가 등급 결정
 - 평가결과를 등급화(우수-보통-개선필요, 3등급)하고, 기관별 종합평정은 실시하지 않음

- 평가결과 및 평가등급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개선필요과제에 대해 현장점검 및 정책컨설팅 수행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관에 대해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평가결과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과제별 평가 등급 결정

*정책평가단 검토회의는 정책평가단 단장과 6개 분과의 분과장으로 구성

○ 평가결과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

○ 관련기관 개선계획 수립·제출

○ 개선계획 이행사항 점검

○ 평가 경과

[표 13]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진행경과 및 세부절차

| 구 분 | 세부 내용 | 일 정 | 비 고 |
|------------------|-----------------------------|---------------------|---------------------|
| • 평가방향 및 세부지침 수립 | ·'1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마련 | '13.6월 | 지 재 위 |
| | ·'13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의견제출 | '13.7월 | 관계기관 |
| | ·'13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 확정·송부 | '13.8월 | 지 재 위 |
| • 시행계획 평가 | ·'13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및 보완 | ~'14.2월 | 관계기관 |
| | ·정책평가단 워크숍 | '14.3.27. | 지재위 / 정책평가단 |
| | ·정책평가단의 실적보고서 1차 평가 | ~'14.4.6 | 정책평가단 |
| | ·정책평가단 조정회의 및 검토회의 | '14.5.1 '14.7.10 | 정책평가단 |
| | ·정책컨설팅 | '14.6.27 ~30 | 지재위/ 한국생산성 본부 |
| • 평가결과 확정 및 피드백 |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 | ~'14.7월 | 지 재 위 |
| | ·관련 기관 개선계획 수립·제출 | ~'14.8월 | 관계기관 |
| |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 수 시 | 지 재 위 |

□ 2014년

- (평가방법) 정책평가단 평가위원이 각 기관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정성평가 실시
 - 추진실적에 대한 정량평가, 실질적인 성과 및 정책현장의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정책평가단 서면평가 후 평가단장 및 6개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1차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우수과제와 개선 필요과제 후보선정
-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결과(안)를 송부하고, 개선필요 후보과제 관련 기관에 2차 조정회의에서의 발표 및 소명기회를 제공
- 2차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필요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평가과제의 평가 등급 최종 확정
- 평가 경과

[표 14] '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진행경과 및 세부절차

| 구 분 | 세부 내용 | 일 정 | 비 고 |
|------------------|--------------------------|----------------------|-------|
| ◆ 평가방향 및 세부지침 수립 | ·'14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마련 | '14.6월 | 지 재 위 |
| | ·'14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의견제출 | '14.7월 | 관계기관 |
| | ·'14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 확정·송부 | '14.8월 | 지 재 위 |
| ◆ 시행계획 평가 | ·'14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및 보완 | ~'15.1월 | 관계기관 |
| | ·정책평가단의 실적보고서 서면 평가 | ~'15.3.27. | 정책평가단 |
| | ·정책평가단 조정회의(2회) | '15.4.14 '15.5.15 | 정책평가단 |
| | ·정책컨설팅 실시 | ~'15.6 | 지재위 |
| ◆ 평가결과 확정 및 피드백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 | ~'15.7월 | 지 재 위 |
| | ·관련 기관 개선계획 수립·제출 | ~'15.8월 | 관계기관 |
| |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 수 시 | 지 재 위 |

□ 2015년

- **(평가방법)** 정책평가단 평가위원이 각 기관에서 작성·제출된 과제별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정량·정성평가 실시
 - 각 평가지표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실적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실질적인 성과와 정책현장의 체감도 등의 정책효과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 **(평가절차)** 단계별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
 - **(1차 서면평가)** 각 평가위원이 분과별 평가과제를 개별 평가
 - **(2차 분과위평가)** 분과별 그룹회의를 진행하여 과제별 평가 점수를 확정하고 분과별 우수 및 개선필요과제 후보를 선정
 - **(3차 조정회의)** 2차 분과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단장 및 6개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
 - * 전체 평가 우수과제 및 개선필요후보과제를 선정하여 평가과제의 평가 등급 결정
 - **(4차 대면회의)** 3차 조정회의에서 선정된 개선필요후보과제에 대해 평가결과(안)을 송부하고, 4차 대면회의에서 발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가 수용성을 제고**하고, 최종 평가 등급 확정
 - * 평가결과를 등급화(우수-보통-개선필요, 3등급)하고, 기관별 종합평정은 실시하지 않음
 - * 개선필요과제 중앙행정기관 3개, 지방자치단체 3개 최종 선정

○ 평가 경과

[표 15] '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진행경과 및 세부절차

| 구 분 | 세부 내용 | 일정 |
|-----------------------|---|---------------|
| 평가준비 | ·정책평가단 워크숍 | 3.2 |
| 정책평가단 평가 실시 | ·정책평가단 분과별 서면평가(1차) - 평가보고서 제출일 : 3.11.(금) | 3.3 ~3.11 |
| | ·분과위 평가(2차) | ~3.15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 ~3.18 |
| | ·정책평가단 대면회의 및 조정회의 개최(3차) | ~4.11 |
| | ·우수·개선필요 과제 선정 등 평가결과 종합 | |
| 위원회 안건상정 및 평가결과 환류 | ·관계기관 최종 평가결과 통보 및 정책환류 실시 | 4월 중 |
| | ·개선필요 과제 관련 맞춤형 정책컨설팅 | 4월 중~ 5월 초 |
| | ·관련 기관 개선계획 수립·제출 | 5월 말 |
| | ·'15년도 시행계획 평가 개선방안 마련 | 6월 |
| | ·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상정 및 평가결과 확정 | 6월 말 |
| |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 수 시 |

□ 2016년

- **(준비)** 소관 부처 및 광역지자체로부터 추진실적 자료 접수(1월), 평가위원 구성 및 워크숍 개최(2.6)
- **(서면평가)** 과제별로 주평가자와 부평가자가 서면평가(2.7~2.13)
 - ※ 주평가자가 부평가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의견서 작성
- **(분과별 평가)** 6개 분과별로 소관 과제에 대한 평가점수를 확정
- **(1차 조정회의)** 분과별 우수 및 개선필요과제 후보 선정(2.17)
 - ※ 개선필요과제 후보 10개 : 중앙행정기관 5개, 광역지자체 5개
- **(2차 조정회의)** 분과위원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단장 및 6개 분과 위원장 주도로 38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안) 도출(3.9)

- 개선필요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발표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최종 평가결과에 반영

[표 16] '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 진행경과 및 세부절차

| 구 분 | 세부 내용 | 일정 |
|------|--|--------------|
| 평가준비 | ·정책평가단 워크숍 | 2.6 |
| 평가실시 | ·정책평가단 개인별 서면평가 - 평가보고서 제출일 : 2.13(월) | 2.6 ~2.13 |
| | ·분과위 종합평가 및 1차 조정회의 | 2.16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 2.17~2.23 |
| | ·정책평가단 2차 조정회의 (대면평가 포함) | 2.24 |
| 결과활용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 상정 | 3월 중 |

2-6. 시행계획 평가체계의 개선 양상

2-6-1. 2012년 결과에 기초한 2013년 평가체계 개선

1) 2012년 평가 결과 : 개선 필요 사항

□ (평가지표 개선 필요) 세부평가지표의 변별력을 고려하여 지표의 보완 및 통폐합이 필요함.

- '3-1. 추진일정의 충실성' 지표는 10개의 세부지표 중 평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편차는 가장 낮게 나타남에 따라 지표의 변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에 보완 혹은 기타 지표와의 통합 등이 요구됨.

- **(지자체 평가체계 개선 필요)** 지자체의 평가결과와 중앙행정기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지자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 **(동향)** 지자체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예산투입으로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 2012년 1조 2,430억원→2013년 1조 6,089억원(3,659억원, 29.4%증)
 - * 지방비 7,456억원(46.3%), 국고지원 8,600억원(53.7%)
- **(평가방법)** 16개 지자체를 공통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의 개선이 요구됨.
 - ‘지역지식재산 역량 강화’ 과제로 16개 지자체를 공통 평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지자체는 지역 지식재산 위주의 사업으로 지식재산 사업과 관련하여 자율성이 매우 낮음. 그로인해 정책의 형성과 집행단계의 평가가 평균을 하회하는 결과 발생.
 - 정책초기단계의 평가인 점을 감안하여 정책의 형성, 집행, 성과단계에 대한 배점을 고르게 배분 적용
 - 기존 타 정부업무평가를 고려하여 평가지표의 배점 조정 필요
- **(평가지표)** 정책성과에 비해 정책형성 및 집행단계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 지식재산센터 위주의 사업수행으로 사전분석에 의한 정책기획력이 부족하고 사업운영이 주도적이지 못하여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자체 특성지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취지에 맞게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성지표 보완 필요

2) 2012년 평가 결과 : 개선 방향 제안

- **(평가체계 개선)** 지자체의 업무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하며, 지자체 공통평가에서 개별평가로 변경
 - 중점추진과제와 관련 대상과제 중 지자체별 전략목표(또는 성과목표)를 대상으로 1개 과제를 자율 선정하여 평가
 - '12년도 우수과제에 대한 평가는 면제하고, 개선필요 과제는 연속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
- **(평가지표 개선)** 정책평가 초기단계로 정책형성, 집행, 성과단계에 고른 배점 분포와 세부평가지표의 변별력을 고려한 지표 개선 필요
 - **(배점변경)** 타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 정책성과단계의 배점에 대한 가중치가 높음. 이에 점진적으로 정책성과의 배점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지표통합)** 변별력이 부족한 지표의 통·폐합
 - **(지자체 특성지표 반영)** 지자체의 정책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보완

3) 2013년 평가 체계 개선 내역

□ 평가지표

- **(지표체계 개선)** '12년도 평가 경험 및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지표체계를 통합·간소화
 - **(배점변경)** 정부업무평가 배점현황을 고려하여 정책성과단계의 배점 비중을 가중
 - * **(중앙)** 기존의 정책형성(30점)/집행(35점)/성과(35점)의 배점을 정책형성(30점)/집행(30점)/성과(40점)으로 변경
 - * 정책효과성 지표 배점 상향(15점→20점)

[표 17] 정부업무평가 배점 현황

| 구분 | 핵심과제평가 | 일자리과제평가 | 녹색성장 평가 | 국가브랜드 정책평가 |
|-------|--------|---------|---------|------------|
| 정책형성 | 20 | 25 | 20 | 20 |
| 정책집행 | 30 | 30 | 30 | 30 |
| 정책성과 | 50 | 35 | 50 | 50 |
| 정책만족도 | | 10 | |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표 18] '12년도 평가지표 대비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2012 | | 구분 | 2013 | |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
| 중앙행정기관 | 정책형성 (30) | 1-1. 계획 수립의 적절성(15) | 정책형성 (30) | 1-1. 계획수립의 적절성 (15) | 1-1. 사전분석·의견수렴의 충실성(5) | |
| |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 2. 정책 기반 확보 수준(15) | 2-1. 추진체계의 충실성(5) |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5) | 2-1. 추진체계의 충실성(5) | 2-1. 추진체계의 충실성(5) | |
| | | 2-2. 자원배분의 적정성(10) | | 2-2. 자원배분의 적정성(10) | 2-2. 자원배분의 적정성(10) | |
| | 정책집행 (35) | 3. 추진과정의 효율성(25) | 3-1. 추진일정의 충실성(10) | 3. 추진과정의 효율성 (20) | 3-1. 유관기관 정책과의 연계성(10) | 3-1. 유관기관 정책과의 연계성(10) |
| | | | 3-2.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10) | | 3-2.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3-2.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 | | 3-3.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5) | 4. 정책확산 노력 수준 (10) | 4-1. 정책소통·홍보·교육의 충실성(10) | 4-1. 정책소통·홍보·교육의 충실성(10) | |
| | 4. 정책 확산 노력 수준(10) | 4-1. 정책소통·홍보·교육의 충실성(10) | 정책성과 (35) |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40) | 5-1. 성과목표 달성도(20) | 5-1. 성과목표 달성도(20) |
| | 5. 정책 성과 및 효과성(35) | 5-1. 성과목표 달성도(20) | | 5-2. 정책 효과성(20) | 5-2. 정책 효과성(20) | |
| | | 지자체 | 정책형성 (35) | 1-1. 사전분석·의견수렴의 충실성(5) | 정책형성 (35) | 1-1. 사전분석·의견수렴의 충실성(5) |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20) | 2-1.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5) | |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20) | 2-1.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5) | 2-1.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5) | |
| | 2-2. 지자체 정책 차별성(15) | | | 2-2. 지자체 정책 차별성(15) | 2-2. 지자체 정책 차별성(15) | |
| 3. 추진과정의 효율성 (20) | 3-1.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10) | | 3. 추진과정의 효율성 (20) | 3-1.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10) | 3-1.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10) | |
| | 3-2.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 | 3-2.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3-2.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
| 4. 정책확산 노력 수준 (10) | 4-1. 정책소통·홍보·교육의 충실성(10) | | 4. 정책확산 노력 수준 (10) | 4-1. 정책소통·홍보·교육의 충실성(10) | 4-1. 정책소통·홍보·교육의 충실성(10) | |
| |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35) | | | 5-1. 성과목표 달성도(15) | 5-1. 성과목표 달성도(15) | |
| 5. 정책 성과 및 효과성(35) | 5-2. 정책 효과성(20) | |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35) | 5-2. 정책 효과성(20) | 5-2. 정책 효과성(20) | |

- (지표 통합) 변별력이 약한 '3-1. 추정일정의 충실성' 지표와 '3-3.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지표를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 (10)'으로 통합함.

* 추진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상황변화에 대응함.

- (지자체 특성지표 보완)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자체 정책차별성 (15)'을 신설하여 정책집행 단계를 보강함.

*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되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현지화 전략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한 사업노력도 측정

* (예시) 10인 미만 청년창업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지원(서울, 100% 자체예산)

* '성과목표 달성도' 배점 하향(20점→15점), '정책 효과성' 지표 배점 상향(15점→20점)

□ 추진실적보고서 작성양식

○ (전체) '3-2.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 지표'

- 변별력이 낮은 '추진일정의 충실성' 지표를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지표와 통합
- 과제별 추진계획상 일정을 준수하였는지,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건·상황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
- 세부평가 기준은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판단,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구성됨
- *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판단'은 13년도 시행계획상 평가과제 관련 추진일정과 추진실적 및 지연사유 기재
- *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은 만족도조사, 여론조사,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분석 등 온·오프라인 활동 내용을 기재하고, 활동 내용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및 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내용을 기술

○ (지자체) '2-2. 지자체 정책차별성' 지표 신설

- 지자체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기획·추진 여부에 대한 평가

- *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기관장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의지의 반영 여부
- *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지역별 정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분석자료, 주요 정책 내용과 지역특수성의 부합성,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 사업추진 노력, 지자체 역점추진과제에 효과적인 자원 투입과 정책효과성 등 지역특수성 관련 내용 기술

□ 평가 과정

- **(평가방향 및 세부지침 수립)** 평가지침 안 마련 후,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을 확정하도록 지침 수립 과정을 세분화
- **(워크숍)** 지식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하여 애로사항 의견 수렴과 정보제공
 - 실무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정책추진 애로사항 의견 수렴
 - 최근 동향, 타기관 우수사례 등 지재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및 원활한 정책 수행 여건 마련
 -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및 목표치 설정 방법 교육
 - 평가지침 및 보고서 작성양식 설명
- **(정책컨설팅)**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이슈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보완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정책 수행 지원
 - * 대상 :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에서 2차조정회의에서 개선필요로 선정된 6개 과제
 - * 중앙행정기관(3) : 현지침해 대응 지원(외교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수준 제고(법무부),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교육부)
 - * 지방자치단체(3) : 창조적 지식재산 창출환경 조성(대전),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통한 창출 활성화(경기),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마련(세종)
 - * 개선방안에 따른 장·단기적 계획 수립 지원

[표 19] '12-'13년도 평가과정 변경사항

| 구분 | 2012 | | | 구분 | 2013 | | |
|---------------------------------|---|----------------|-----------|---------------------------------|----------------------------------|-------------------------|-------------------------|
| | 세부내용 | 일정 | 비고 | | 세부내용 | 일정 | 비고 |
| 평가 방향 및 세부 지침 수립 | 「'12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계획」 제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 | '12.4월 | 지재위 | 평가 방향 및 세부 지침 수립 | '13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마련 | '13.6월 | 지재위 |
| |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지침」 수 립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12.12 월 | 지재위 | | '13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의견제출 | '13.7월 | 관계기 관 |
| 시행 계획 평가 | 12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및 자료 보완 | ~'13.2 월 | 관계기 관 | 시행 계획 평가 | '13년도 시행계획 평가지침 확정·송부 | '13.8월 | 지재위 |
| | 정책평가단의 실적보고서 1차 평가 | ~'13.3 월 | 정책평 가단 | | '13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및 보완 | ~'14.2 월 | 관계기 관 |
| | 정책평가단 조정회의 | '13.4.8 | 정책평 가단 | | 정책평가단 워크숍 | '14.3.2 7. | 지재위/ 정책평 가단 |
| 평가 결과 확정 및 피드 백 | 12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관계기관 송부 | ~'13.6. 28. | 지재위 | 시행 계획 평가 | 정책평가단의 실적보고서 1차평가 | ~'14.4 .6 | 정책평 가단 |
| | 관련 기관 개선계획 수립·제출 | ~'13.7 월 | 관계기 관 | | 정책평가단 조정회의 및 검토회의 | '14.5.1 '14.7.1 0 | 정책평 가단 |
| |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 수시 | 지재위 | | 정책컨설팅 | '14.6.2 7 ~30 | 지재위/ 한국생 산성본 부 |
| | | | | 평가 결과 확정 및 피드 백 |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 | ~'14.7 월 | 지재위 |
| | | | | | 관련기관개선계획수 립·제출 | ~'14.8 월 | 관계기 관 |
| | | | | |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 | 수시 | 지재위 |

□ 정책적 시사점

○ (평가체계 보완) 정책평가단 평가 가이드라인 보완

- 정성적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가이드라인 필요

- **(현장실사 필요)** 현장조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평가과정에 포함
 -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보완이 요구됨.

2-6-2. 2013 결과에 기초한 2014 평가체계 개선

1) 2013년 평가 결과 : 개선 필요 사항

- **(평가체계)** 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의 한계 발생
 - 평가시 관계자 소환 및 현장조사가 요구됨.
- **(환류체계)** 피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노력 및 의지에 대한 평가 보완 필요
 - 지식재산 평가 초기단계로 평가결과에 의한 기관 서열화가 아닌 정책 수행 지원이 목적이며, 그에 따른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및 기관의 의지에 대한 평가지표 보완 필요
 - 년 단위 실적에 의한 기계적인 평가를 지향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차년도 개선계획 수립 및 기획에 대한 노력도 평가에 포함

2) 2013년 평가 결과 : 개선 방향 제안

- **(평가체계 개선)** 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의 한계점 발생과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대한 소명기회 부재
 - 2차 조정회의에서 개선필요과제를 다수 선정 후 피평가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최종 평가등급 결정
 -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평가결과를 1차 통보하고 그에 따른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최종 등급 부여

- **(환류체계 강화)** 평가이후 개선 이행사항 및 노력에 대한 평가 보완 필요
 - 정책 초기단계로 평가결과에 의한 기관 서열화가 아닌 원활한 정책 수행이 목적이므로,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기관의 의지에 대한 평가지표 보완 필요
- **(선순환시스템 마련)** 평가결과를 예산, 정책개선, 포상, 컨설팅 등과 연계 하여 지속적인 성과관리 선순환시스템 구축 필요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평가결과 ‘미흡’과제에 대해 차년도 예산편성 시 10% 삭감 적용
- **(현장실사 필요)** 현장조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평가과정에 포함
 -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통한 평가 보완이 요구됨.

2-6-3. 2015 결과에 기초한 2016 평가체계 개선

1) 2015년 평가 결과 : 개선 필요 사항

□ 평가체계

-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의 변별력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도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개선 필요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지표는 달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과목표 달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두 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필요
 -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 지표는 달성도는 높으나 편차는 낮아 지표 변별력이 낮음

□ 평가지표

○ (중앙부처)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43. 개선성과 우수성' 지표는 삭제 및 평가완화 필요
- '1-1.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1-3.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 '3-1.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 지표는 평가항목 개선 및 일부 삭제, 지표 통합 필요
- '2-1.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2-2.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 '4-1. 정책목표 달성도', '4-2. 정책 효과성' 지표는 달성도가 80%를 상회하고 표준편차가 11(표준화 점수)이하로 변별력이 낮아, 지표 통합 및 평가항목 개선 필요

○ (지방자치단체)

- '2-2.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지표로서 지속적인 사용 필요
- '1-4. 지자체 정책 차별성', '43. 개선성과 우수성' 지표는 삭제 및 평가완화 필요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1-3.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 지표의 평가항목 개선 및 일부 삭제, 지표 통합 필요
- '1-1.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2-1.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3-1.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 '4-1. 정책목표 달성도', '4-2. 정책 효과성' 지표는 달성도가 평균을 상회하고 표준편차 9(표준화 점수) 이하로 지표 변별력이 낮아, 지표 통합 및 평가항목 개선 필요

□ 평가위원 및 피평가기관 의견수렴

○ (중앙부처)

- 신규과제와 계속과제의 분리 평가 필요
 - ※ 신규사업은 사전분석, SWOP,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만, 계속사업은 통상적으로 사전 분석 과정을 생략하고 추진함에 따라 분리 평가 필요
- 자원배분에 대한 배점 상향
 - ※ 자원배분은 정책추진의 동력원으로 명확한 자원배분 계획 수립 필요
- 2-1, 2-2 지표의 통합
 - ※ 유관기관과의 정책연계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정책소통은 필수 요소
- 정책효과성 지표 배점 하향
 - ※ 추상적인 측정이 지배적으로 실제 효과성에 대한 평가 미흡
- 개선성과 우수성 지표 삭제
 - ※ 개선필요과제 이외 평가과제는 연속적으로 평가되지 않아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평가 불가

○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식재산 분야 인사교류에 대한 평가
- 정책관심도 지표 신설
 - ※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배정 비율(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비율) 및 증감률을 통해 지식재산정책의 관심도 평가
- 1-4. 지자체 차별성 지표의 배점상향
 - ※ 지자체의 차별화된 정책 기획을 위해 배점 상향 필요
- 1-1, 1-2 지표통합
 - ※ 정책기획시 기대효과, 성과목표를 구축함에 따라 지표 통합으로 평가 간소화
- 지자체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 강화
 - ※ 조정회의시 지자체의 지식재산 조례, 예산, 기관장 관심도 등 지역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 강화 의견 제시

2) 2015년 평가 결과 : 개선 방향 제안

- **(평가체계 개선)**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의 변별력 확보와 정책목표 달성도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개선 필요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지표는 달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과목표 달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두 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필요
 -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 지표는 달성도는 높으나 편차는 낮아 지표 변별력이 낮음

3) 2016년 평가 체계 개선 내역

□ 평가지표

- **(지표 통합)** 2-1 지표와 2-2 지표의 통합으로 지표 변별력 강화
 - '2-1.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지표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정책 추진상 연계평가가 가능한 '2-2.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 지표를 통합하고 배점을 20점(지자체 15점)으로 설정
 - ※ 2-1 지표의 표준편차(중앙 7, 지자체 9)는 낮고 달성도(중앙 78.9%, 80.7%)는 높아 변별력이 낮게 나타남
 - ※ 유관기관과의 정책연계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정책소통은 필수 요소로 지표 통합으로 두 항목을 연계하여 평가
- **(지표 삭제)** 4-3 지표를 삭제하고 4-3 지표의 평가항목을 4-1 지표로 흡수하여 평가 효율성 제고
 - '4-3. 개선성과 우수성' 지표를 삭제하여 평가 공백 최소화 필요

※ 본 평가는 기관 평가가 아닌 과제별 평가로 연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년도 평가 결과의 개선사항 부재로 평가 불가

- 4-3 지표의 평가 항목을 4-1 지표에 흡수하여 전년도 평가결과 및 자체평가, 대외평가 등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평가

※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자체평가 및 자의적 개선사항, 외부평가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성과 평가

○ **(배점 변경 및 지표연계성 강화)** 4-1와 1-4(지자체) 지표의 배점 상향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차별성 강화

- '4-1. 정책목표 달성도' 지표의 배점 상향으로 성과를 극대화 하되,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지표의 평가결과와 4-1 지표의 평가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표 변별력 향상

※ 4-1 지표의 배점 상향을 통한 성과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평가위원 의견

※ 1-2 지표의 표준편차(중앙 15, 지자체 10)는 높으나, 1-2 지표의 평가결과와 연계되어 있는 4-1 지표의 표준편차(중앙 11, 지자체 6)으로 1-2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4-1 지표의 배점을 상향하되 1-2 지표의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1-2 지표 평가결과에 따라 4-1 지표의 가감점 항목 확대

- '1-4. 지자체 정책차별성' 지표의 배점 상향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기획 및 적극적인 지식재산 정책 추진 강화 필요

※ 지자체의 차별화된 정책추진을 위해 1-4 지표의 배점 상향이 필요하다는 평가위원 의견 반영

○ **(평가항목 보완)** 1-1 지표의 평가항목 세분화와 1-3(지자체) 지표의 평가항목 보완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와 지자체의 정책 관심도 및 인프라 강화

- '1-1.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표의 신규과제와 계속과제에 대해 분리 평가하고 평가항목 세분화

※ 신규과제는 사전분석, SWOP,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만, 계속과제는 통상적으로 사전 분석 과정을 생략하고 계속과제와 신규과제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는 세부 평가 가이드라인 보완

- (신규 평가항목 보완) '1-3.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에 세부 평가항목으로 예산 증감율과 예산 비율을 반영하여 지식재산 정책 관심도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 강화

※ 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관심도에 대한 평가로 지자체 전체 예산대비 지식재산 예산 비율 또는 전년대비 지식재산 예산 증감률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관심도 평가

[표 20] 평가지표 변경 내용 요약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
| 1-1.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 10 (10) | 1-1.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 10 (10) | • 가이드라인 보완 (신규/계속과제 분리 평가) |
| 1-3.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 | 10 (10) | 1-3.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 | 10 (10) | • 지식재산 관심도 (지자체) |
| 1-4. 지자체 정책차별성 | (5) | 1-4. 지자체 정책차별성 | (10) | • 배점 변경 |
| 2-1.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 10 (10) | 2-1. 교육 및 정책 소통,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20 (15) | • 지표통합 |
| 2-2.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 | 10 (10) | | | |
| 4-1. 정책목표 달성도 | 20 (15) | 4-1. 정책목표 달성도 | 25 (20) | • 배점 변경 • 평가항목 보완 - 지표연계성 강화 - 4-3 지표 흡수 |
| 4-3. 개선성과 우수성 | 5 (5) | 4-3. 개선성과 우수성 | 5 (5) | • 지표 삭제 - 4-1로 지표 흡수 |

주1) ()는 지자체 배점

[표 21]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 개선(안) 세부 내용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
| 정책 형성 (30) | 1.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 (30) | 1-1.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10) - 사전분석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기획의 타당성 - 정책내용 및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신규/계속과제 분리 평가 |
| |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목적의 달성정도와 실적추세를 반영한 합리적 수준 |
| | | 1-3.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10) - 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의 확보 여부 및 적정성 - 예산확보 및 배분, 집행의 적정성 |
| 정책 집행 (30) | 2. 정책추진 효율성 (20) | 2-1. 교육 및 정책 소통,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20) - 유관기관과 정책 유사·중복 여부 - 유관기관과의 정책연계를 통한 업무협조 및 시너지 효과 - 대국민 정책소통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도 -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에 대한 교육 정도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
| | 3. 정책 모니터링 (10) | 3-1.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추진일정의 충실성 -모니터링에 시스템 및 상황변화에 대한 문제해결 |
| 정책성과 (40) | 4. 정책성과 (40) | 4-1. 정책목표 달성도(25) -정량평가(성과지표 달성도) -정성평가(지식재산 발전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정책목표 달성도) -개선사항 우수성 ※1-2 지표와 연계성 강화(가이드라인 세분화) |
| | | 4-2. 정책 효과성(15) -정책추진으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

[표 22]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개선(안) 세부내용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
| 정책형성 (35) | 1. 자·재산 전략 및 기획 (35) | 1-1.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10) -사전분석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기획의 타당성 -정책내용 및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신규/계속과제 분리 평가 |
| |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성과지표가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사업목적의 달성정도와 실적추세를 반영한 합리적 수준 |
| | | 1-3.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10) -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의 확보 여부 및 적정성 -예산확보 및 배분, 집행의 적정성 -정책관심도(예산비율 및 증감률) |
| | | 1-4. 지자체 정책차별성(10) -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기획 |
| 정책집행 (30) | 2. 정책추진 효율성 (15) | 2-1. 교육 및 정책 소통,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15) -유관기관과 정책 유사·중복 여부 -유관기관과의 정책연계를 통한 업무협조 및 시너지 효과 -대국민 정책소통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도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에 대한 교육 정도 |
| | 3. 정책 모니터링 (10) | 3-1.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추진일정의 충실성 -모니터링에 시스템 및 상황변화에 대한 문제해결 |
| 정책성과 (35) | 4. 정책성과 (35) | 4-1. 정책목표 달성도(20) -정량평가(성과지표 달성도) -정성평가(지식재산 발전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정책목표 달성도) -개선사항 우수성 ※1-2 지표와 연계성 강화(가이드라인 세분화) |
| | | 4-2. 정책 효과성(15) -정책추진으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

□ 정책적 시사점

- **(성과계획 점검 강화)** 지식재산시행계획 단계에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성과계획서의 점검 및 검토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질적 성과지표의 부재, 소극적 목표치 설정, 추세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치 설정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개선사항이나 개선 성과는 다소 미흡
 - ※ 지식재산 시행계획 단계에서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적정수준의 목표치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점검이 필요과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평가 이전에 성과계획서의 점검 및 검토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 과년도 평가결과 향후과제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성과계획서 반영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필요
 - ※ 과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족함

2-6-4. 2016년 결과에 기초한 2017년 평가체계 개선

1) 2016년 평가 결과 : 개선 필요 사항

□ 시행계획 평가 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조직의 한계
 -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실행예산을 별도로 가지게 되나, 지식재산위원회는 행정청(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심의·의결 직제에 불과하여 실행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음.

○ 협조의 한계

- 국가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자체도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수단으로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를 하고 있음.

※ 소극적 협조는 되고 있으나 부처가 다른 예산으로 수행한 실적 중에 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연관성있는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수준임.

-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에 대한 중앙행정청의 개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예산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고 시행계획 평가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행정을 고유사무로 인식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확대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행계획 수립의 전문성·충실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016년 평가 결과 : 개선 방향 제안

□ 평가체계 개선

-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틀이 기본계획과 상이한 측면이 있어, 시행계획 평가 시 기본계획을 고려하는 평가체계 강화
- 시행계획 평가는 매년 시행계획과 시행실적을 비교하고, 기본계획의 이행도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음

[표 23] 2016년과 2017년의 평가체계 차이 비교

| '12-'16년 시행계획 평가체계 | '17-21년 시행계획 평가체계 |
|--|---|
| [선별평가] 부처·지자체의 행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당해연도 시행계획-시행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음 | [전수평가]* 기본계획 중심의 시행계획-시행실적 평가체계로 전환필요 |
| [시행계획 한정평가] 기본계획(5년)과 도별 시행계획의 연관성은 평가하지 않았음 | [기본계획 연관평가] 기본계획(5년)과 도별 시행계획의 연관성 평가필요 |

| | |
|---|---|
| [사업내용 평가] 부처·지자체 추진실적 내의 사업(정책) 내용의 적절성 위주로 평가하였음 | [시행실적 평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부처별 추진실적을 종합(년도별 시행실적)하여 년도별 시행계획과 년도별 시행실적을 비교평가 필요(달성도 평가) |
|---|---|

* 전수평가의 실시 여부는 부처·청별 추진계획 상의 과제 수를 고려하여 결정 필요

□ 평가지표 변경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시행계획의 부합성” 등을 신규지표로 추가할 것을 제안
- 자원배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표인 “추진실적의 내용적 우수성” 부문에 “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추가

[표 24] 2016년과 2017년의 평가지표 차이 비교

| 현행 평가지표 | | | 개선 평가지표 | | |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 정책 형성 (30) | 1.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30) | •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10) | 신규 추가 | 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부합성 | •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 | |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10) | | | •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
| | | •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10) | 2. 추진계획-추진실적의 우수성 | • 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의 달성도() | |
| 정책 집행 (30) | 2. 정책추진 효율성(20) | • 교육 및 정책 소통,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20) | 기존 지표 | 3. 추진실적의 내용적 우수성 | • 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 |
| | 3. 정책 모니터링(10) | •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10) | | | • 교육 및 정책 소통,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 정책 성과 및 환류 (40) | 4. 정책성과 및 환류(40) | • 정책목표 달성도(20) | | | # 자원배분과 연계 |
| | | • 정책 효과성(15) | • 정책목표 달성 효과성() | | |
| | | • 개선성과의 우수성(5) | | | |

부처 ⇒ 지식재산위원회: 전년도 추진실적(시행계획 평가의 대상)+차년도 추진계획(1.31까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고려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법
 - 조례재정(고유사무) ⇒ 지방자치단체 예산투입
- 국가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자체에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해당 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필요

[표 25]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법 비교

| 중앙 | 지방 |
|------------|-----------------|
| 지식재산기본법 | 지식재산 기본조례 |
| 지식재산위원회 | (특별·광역)시·도 |
| 지식재산 중앙예산× | 지식재산 지방예산○ |
| 위임사무× | 고유사무 |
| 기본계획 | 의견제출 |
| 시행계획⇒추진계획 | 추진계획 |
| 시행계획 평가 | 평가에 대한 부담(고유사무) |

※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의 유형¹⁾: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행정청)은 상호협력 또는 견제의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에는 자치조례 제정권이 부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행정청)에게는 자치규칙 제정권과 행정규칙 제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① 고유사무(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② 단체위임사무(중앙행정청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하여 수행하며, ③ 기관위임사무(중앙행정청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고유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명확히 구분이 되지만, 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중간적 사무로서 처리 방법이 상호 유사하여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청 - 국가 - 의 사무이므로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미친다.

1) 홍동희(2014), 한국행정법론, 과학기술법제연구원, 218-219면

[표 26] 지식재산기본법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

| 구분 | 기본계획-시행계획 |
|---------|--|
| 지식재산기본법 | <p>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11.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교육·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p>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구분 | 기본계획-시행계획 |
|----------------|--|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 <p>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p> <p>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p> <p>④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계획에 포함된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2. 단위사업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 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

3. 타 부처의 2016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체계

3-1. 기초·기반관련 분야

3-1-1. [미래부-現 과기부] 과학기술기본계획

1) 점검·평가 대상 기관

- **(2013년)** 과학기술혁신정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21개 중앙행정기관*(11부 1처 8청 1위원회)
 - *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18개 중앙행정기관 중 대상사업이 없는 국방부를 제외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4개 기관(소방방재청, 산림청,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을 추가
- **(2014년)** 과학기술정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21개 중앙행정기관*(11부 2처 7청 1위원회)
 - *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18개 중앙행정기관 중 대상사업이 없는 국방부를 제외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4개 기관(국민안전처, 산림청,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을 추가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3-’17)」 시행계획으로 같음
- **(2015년)** 과학기술정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21개 중앙행정기관*(11부 2처 7청 1위원회)
- **(2016년)** 과학기술정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21개 중앙행정기관*(11부 2처 7청 1위원회)

[표 27] 2013-2016년의 점검·평가 대상 기관

| 년도 | 구분 | 기관명 |
|------|--------------|---|
| 2013 | 11부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 | 1처. 8청. 1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 2014 | 11부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부, 행정자치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
| | 2처. 7청. 1위원회 | 국민안전처, 식약처,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 2015 | 11부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 | 2처. 7청. 1위원회 |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 2016 | 11부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 | 2처. 7청. 1위원회 |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2) 점검·평가 대상 과제

- **(2013년)** 기본계획의 5대 전략, 19개 분야, 78개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분야 사업 및 정책
- **(2014년)** 기본계획의 5대 전략, 19개 분야, 78개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과학기술분야 사업 및 정책
- **(2015년)** 제3차 기본계획의 19대 분야, 78개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 및 사업

- **(2016년)** 제3차 기본계획의 **19대 분야, 78개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 및 사업
 - **(예산사업)** 연구개발사업, 비연구개발사업, 기관지원사업
 - 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예산사업 일체
 - ※ 인문사회 R&D 사업 및 일부 국방 R&D사업, 정책연구사업, 기관운영경비 및 인건비성 사업은 제외
 - 비연구개발 사업 : 과학기술문화진흥 , 기술금융, 기술이전 및 창업 촉진, 표준, 지적권 강화 등의 기본계획 관련 사업 등
 - 기관지원사업 : 과학기술 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 예산사업
 - **(비예산사업)** 주요 정책,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사항 등

3) 평가 지표

- **(2013-2015년)** 정책 목표별 14개 평가지표
- **(2016년)** 정책 목표별 13개 평가지표
 - ※경제부흥전략에서 R&D경제성장 기여율 지표 삭제

[표 28]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의 평가지표

| 지표명 |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
| |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목표 | 실적 |
| 투자확대 | ·정부 R&D예산 | 16.0조원 (‘13년) | 17.1조원 (‘13년) | 17.7조원 | 17.8조원 | 18.9조원 | 18.9조원 | 19.1조원 | 19.1조원 |
| | ·기초연구 비중 (정부R&D예산 대비) | 35.2% (‘12년) | 37.1% (‘14년) | 37% | 37.1% | 38.1% | 38.1% | 39.0% | 39.0% |
| |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 (정부R&D예산 대비) | 12.0% (‘10년) | 13.2% (‘12년) | 15.4% | 16.9% (‘13년) | 17.9% | 16.8% (‘14년) | 18.0% | 18.0% (‘15년) |
| 국가전략 기술개발 | ·국가전략기술경쟁력제고 (세계 최고 수준 대비) | 77.8% (‘12년) | 77.8% (‘12년) | 78.6% | 78.4% | 79.6% | 78.4% (‘14년) | 82% | 78.4% (‘14년) |
| 증장기 창의역량 강화 | ·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 | 9위 (‘12년) | 8위 (‘13년) | 8위 | 7위 | 7위 | 5위 | 5위 | 5위 |
| | ·상위 1% 논문 순위 | 15위 (‘08~‘10년) | 15위 (‘12~‘13년) | 14위 (‘13~‘14년) | 15위 (‘12~‘13년) | 13위 | 14위 (‘10~‘14년) | 12위 | 15위 (‘11~‘15년) |
| |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율 | 0.40% (‘09년) | 0.40% (‘09년) | 0.44% | 0.56% (‘11년) | 0.6% | 0.6% (‘12년) | 0.62% | 0.64% (‘14년) |
| | ·연구원 천명 당 국제공동특허 수 | 0.38건 (‘11년) | 0.38건 (‘11년) | 0.43건 | 0.38건 (‘11년) | 0.45건 | 0.52건 (‘13년) | 0.55건 | 0.52건 (‘13년) |
|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 74.8% (‘11년) | 77.4% (‘13년) | 78.7% | 75.6% (‘13년) | 80.1% | 77.1% (‘14년) | 81% | 74.3% (‘15년) |
| 일자리 창출 | ·창업활동지수(TEA) | 6.6% (‘12년) | 6.9% (‘13년) | 7.2% | 6.9% (‘13년) | 7.7% | 9.3% (‘13년) | 9.6% | 9.3% (‘15년) |
| 경제부흥 | ·R&D경제성장 기여율 | 35.4% | - | 35.4% (‘81~‘10) | - | 35.4% (‘81~‘10) | - | 항목없음 | |
| |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 2.0만\$ (‘11년) | 2.2만\$ (‘13년) | 2.2만\$ (‘11년) | 2.0만\$ (‘11년) | 2.33만\$ | 2.37만\$ (‘14년) | 2.44만\$ | 2.4만\$ (‘15년) |
| | ·기술수출액(백만\$) | 4,032백만\$ (‘10년) | 5,311백만\$ (‘12년) | 6,887 | 6,846 (‘13년) | 7,400 | 9,765 (‘13년) | 10,000 | 10,408 (‘15년) |
| 삶의 질 기여 | ·삶의 질 투자 확대 (정부R&D예산 대비) | 13.9% (‘12년) | 13.9% (‘12년) | 16.0% | 13.8% (‘13년) | 17.1% | 13.4% (‘14년) | 18% | 14.3% (‘15년) |

4) 점검 · 평가 절차

□ 2013년

○ 추진절차

[표 29] 2013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 | |
|---------------------|-----------|------------------------|
| 2013년도 추진실적 점검지침 통보 | '14.1.28. | 미래창조과학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추진실적 작성·제출 | '14.2.25.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 2013년도 추진실적(안) 작성 | '14.3월 | 미래창조과학부 |
| 추진실적 점검(안) 협의 | '14.4월 초 | 미래창조과학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추진실적(안) 심의·의결 | '14.4.10.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
| 심의 결과 통보 | '14.4월 중 | 미래창조과학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2014년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에 대한 추진실적 중간점검

- 2014년도 시행계획 상 목표 달성 정도 점검
- '14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한 목표 및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달성 여부 검토
- 과학기술기본계획 대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정도 점검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표 성과지표로부터 심층 검토과제 도출
- 심층 검토 후 추진이 미흡한 과제에 대해 개선 사항 발굴 및 권고
- 각 부처는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15년도 시행계획 수정 보완

○ 수립 절차

- (각 부처)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14년도 시행계획 상 목표 달성 여부 자체 진단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15년도 시행계획(안) 작성
- (미래부) 각 부처의 '14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 진단결과와 '15년도 시행계획 초안에 대해 심층 분석 후 검토 의견 제시
- (각 부처) 각 부처의 재검토 및 시행계획 수정 및 보완

○ 향후 계획

- 각 부처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래부의 의견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 수립 시 반영
- 미래부 검토의견에 대한 각 부처의 조치여부를 자체평가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16년도 평가부터 시행 예정
- '15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인 경우 '16년도 또는 '17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 2015년

○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중점 방향

-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여 '16년도 권고사항 도출
 - ※ (각 기관) 기본계획 및 '15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 진단, '16년도 시행계획(안) 작성 → (미래부) 전문가 검토의견 제시 → (각 기관) 재검토 및 시행계획(안) 반영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 강화
 -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과 '17년도 예산 연계 추진
 - 기본계획 추진실적 심층검토에 대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조치 결과를 '16년도 자체평가부터 반영

○ 수립 절차

[표 30] 2015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 | |
|---------------------------------|----------|--------------------------|
| '15년도 추진실적 및 '16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15.10월 | 미래부 → 각 부처 |
|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제출 | '16.1월 | 각 부처 → 미래부 |
| 각 부처 시행계획 수정 및 보완 | 16.2월 | |
| 종합 시행계획(안) 수립 | '16.2월 | 미래창조과학부 |
| 종합 시행계획(안) 협의 | '16.2월 | 미래부 ↔ 각 부처 |
|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 '16.3.11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
| 심의 결과 통보 | '16.3.15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 → 각 부처 |

○ 향후 계획

- (제3차 기본계획 점검결과)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 및 중점 추진사항에 관한 의견을 '17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수립 시 반영
- 권고사항 조치 결과를 '16년도 자체평가부터 반영
- (제4차 기본계획 사전연구) 제3차 기본계획의 실적을 점검, '제4차 기본계획('18~'22)'의 수립 방향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연구 실시
- 제3차 기본계획의 78개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의 실적 점검, 주요 국가(일본, 중국 등)의 중장기 기본계획 및 관련정책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 분야*별 국내 현황 조사, 중장기 정책방향 도출 및 기본방향 수립
-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20여개 세부 사항
-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처 참여 및 협력방안 분석

□ 2016년

○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중점 방향

-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R&D 관련 주요정책 중 주요 사항에 대해 심층검토를 실시하여 '17년도 권고사항 도출
 - ※ (각 기관) 기본계획 및 '16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 진단, '17년도 시행계획(안) 작성 → (미래부) 전문가 검토의견 제시 → (각 기관) 재검토 및 시행계획(안) 반영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 강화
 -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과 '18년도 예산 연계 추진
 - 「정부R&D혁신방안」 등 기본계획 수립 이후 주요정책에 대한 점검을 포괄하여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시행계획으로서 기능을 확대

○ 수립 절차

[표 31] 2016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 | |
|---------------------------------|----------|-----------------------|
| '16년도 추진실적 및 '17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16.10월 | 미래부 → 각 부처 |
|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제출 | '17.1월 | 각 부처 → 미래부 |
| 각 부처 시행계획 수정 및 보완 | '17.2월 | |
| 종합 시행계획(안) 수립 | '17.2월 | 미래창조과학부 |
| 종합 시행계획(안) 협의 | '17.2월 | 미래부 ↔ 각 부처 |
|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 '17.3.14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
| 심의 결과 통보 | '17.3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 → 각 부처 |

○ 향후 계획

- (제3차 기본계획 점검결과)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 및 중점 추진사항에 관한 의견을 '18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수립 시 반영
- 권고사항 조치 결과를 '17년도 자체평가에 반영
- (제4차 기본계획 기획연구) 제3차 기본계획의 실적을 점검, '제4차 기본계획('18~'22)'의 수립 방향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실시
- 제3차 기본계획의 78개 추진과제 및 성과지표의 실적 점검, 주요 국가(일본, 중국 등)의 중장기 기본계획 및 관련정책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 분야*별 국내외 현황 조사, 중장기 정책방향 도출 및 기본방향 수립
-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20여개 세부 사항
-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처 참여 및 협력방안 분석

3-1-2. [미래부-現 과기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 비전: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 창조사회 구현
- 목표: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 | |
|------|---|
| 투자목표 | ○ '12년 35.2% → '17년 40%(정부 R&D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 |
| 성과목표 | ○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세계 10위권 달성 - '11년 1,268편(세계 15위) → '17년 5,000편(세계 10위) |
| | ○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 육성 - '11년 49명 → '17년 100명 이상 (SCI 피인용 0.1% 논문 주저자) |

1) 점검·평가 대상 기관

- **(2013)** 기초연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 **(2014)** 기초연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10개)
- **(2015)** 기초연구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10개)
- **(2016)** 전 분야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미래부/교육부와 함께 특정분야별 기초연구를 지원 육성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 **(2017)** 전 분야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미래부/교육부와 함께 특정분야별 기초연구를 지원 육성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2) 점검·평가 대상 과제

- **(2013)**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4대 정책과제* 및 14개 중점과제와 관련이 있는 정책 및 사업
 - * ①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 ②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성장기반 확충
 - ③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 ④ 기초연구 성과 활용·확산 강화
 - ※ R&D사업 : 중점과제와 관련이 있는 기초·원천사업
 - ※ 비R&D사업 : 연구성과 확산사업 및 우수 연구인력양성사업 등
 - ※ 비예산 사업 : 기초연구정책, 제도개선 등
- **(2014)**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4대 정책과제* 및 14개 중점과제와 관련이 있는 정책 및 사업
 - * ①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 ②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성장기반 확충
 - ③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 ④ 기초연구 성과 활용·확산 강화
 - ※ R&D사업 : 중점과제와 관련이 있는 기초·원천사업

※ 비R&D사업 : 연구성과 확산사업 및 우수 연구인력양성사업 등

※ 비예산 사업 : 기초연구정책, 제도개선 등

○ **(2015)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4대 정책과제* 및 14개 중점과제와 관련이 있는 정책 및 사업**

* ①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②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성장기반 확충

③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④ 기초연구 성과 활용·확산 강화

※ R&D사업 : 중점과제와 관련이 있는 기초·원천사업

※ 비R&D사업 : 연구성과 확산사업 및 우수 연구인력양성사업 등

※ 비예산 사업 : 기초연구정책, 제도개선 등

○ **(2016)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4대 정책과제* 및 14개 중점과제와 관련이 있는 정책 및 사업**

* ①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②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성장기반 확충

③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④ 기초연구 성과 활용·확산 강화

※ R&D사업 : 기초연구지원, 원천기술개발 사업 등 정부R&D 기초연구비 산정대상 사업

※ 비R&D사업 : 기초연구성과 확산, 우수연구인력양성 등

※ 비예산 사업 : 기초연구 진흥 정책·제도 수립 및 개선 등

○ **(2017)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4대 정책과제* 및 14개 중점과제와 관련이 있는 정책 및 사업**

* ①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②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성장기반 확충

③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④ 기초연구 성과 활용·확산 강화

※ R&D사업 : 기초연구지원, 원천기술개발 사업 등(기초연구가 포함된 사업)

- ※ 비R&D사업 : 기초연구성과 확산, 우수연구인력양성 등
- ※ 비예산 사업 : 기초연구 진흥 정책·제도 수립 및 개선 등

3) 점검·평가 절차

□ 2013년

○ 추진절차

- 관계부처의 2013년도 실적 및 계획 제출('13.7.15~19)
 - ※ 시행계획 수립시점을 고려하여, '13년상반기실적 및'13년하반기계획으로 구분
- 2013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3.7.24~26)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보고 및 확정('13.7.30)

[표 32] 2013년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 |
|---------------------------------------|-----------------|
|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13.7.15)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
| 각 과제별 2013년도 실적 및 계획 제출('13.7.15~19) | 관계 부처 |
| 2013년도 시행계획(안) 마련('13.7월 중)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
| 2013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3.7.24~26) | 관계 부처 |
| 국과심 운영위원회 보고·확정('13.7.30)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 2014년

○ 추진절차

- 관계부처의 '13년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제출('13.12.20~'14.1.15)
- '14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4.2.13~20)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보고 및 확정('14.2.27)

[표 33] 2014년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 |
|--|-----------------|
| 2014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13.12.20)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
| 각 과제별 2013년도 실적 및 2014년도 추진계획 제출('13.12.20~'14.1.15) | 관계 부처 |
| 2014년도 시행계획(안) 마련('14.1~2월)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
| 2014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4.2.13~20) | 관계 부처 |
| 국과심 운영위원회 보고·확정('14.2.27)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 2015년

○ 추진절차

- 관계부처의 '13년도 실적 및 '14년도 계획 제출('14.12월~'15.1월)
- '14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5.2.25~3.3)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 및 확정('15.3.24)

[표 34] 2015년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 |
|--|-----------------|
|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14.12.17)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
| 각 과제별 2014년도 실적 및 2015년도 계획 제출('15.1월) | 관계 부처 |
| 2015년도 시행계획(안) 초안 마련('15.1~2월)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
| 2015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5.2.25~3.3) | 관계 부처 |
| 국과심 운영위원회 심의·확정('15.3.24)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 2016년

○ 추진절차

- 관계부처의 '15년도 실적 및 '16년도 계획 제출(~'16.2월)
- '16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6.4.11.~4.15.)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보고 및 확정('16.4.27.)

[표 35] 2016년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 |
|--|-----------------|
| 2015년도 실적 및 2016년도 계획 제출(~'16.2월) | 관계 부처 |
| 2016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5.4.11.~4.15.)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
| 국과심 운영위원회 보고 및 확정('16.4.27.)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 2017년

[표 36] 2017년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절차

| | |
|--|----------------------|
| 2016년도 실적 및 2017년도 계획 제출(~'17.1월) | 관계 부처 |
| 2017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17.1.20.~1.26.) |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
| 국과심 운영위원회 보고 및 확정('17.2.28.)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4) 투자 및 성과목표 점검

4-1) 투자목표

□ (2012년) 정부 연구개발비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

※ 2013년 발간자료

- 기초연구 투자비중 40%('17) 확대 달성을 위해 '13년도 기초연구비 산정 대상 예산 11.5조원 중 35.4%인 4.1조원을 기초연구에 지원
 - (기초예산) '13년 4.1조원, 전년도 3.9조원 대비 5.13% 증가
 - (기초비중) '13년 35.4*%, 전년도 35.2% 대비 0.2%p 증가
- * 「'13년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안)」 확정('13.6, 기초연구진흥협의회)
- 창의·선도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 ※ '12년 8,000억원 → '13년 8,125억원

□ (2012년) 정책과제별 투자계획

- 10개 부처(청)에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의 4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13년도에 총 2조 7,701억원 투자
 -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 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1조 2,720억원, 45.92%), 기초연구를 통한 미래성장기반 확충(8,051억원, 29.06%),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6,364억원, 22.97%) 순으로 투자
- * 부처별로 제출한 실적을 기준으로 집계(중복 산출된 금액 제외)

□ (2013년)

※ 2014년 발간자료

- 정부 R&D 중 기초연구비 비중 확대
 - (목표치) '17년까지 기초연구비 비중을 40%로 확대('12년 35.2%)
 - (실적치) '14년도 기준 35.4%(4.1조원) 지원

□ (2014년)

※ 2015년 발간자료

○ 정부 R&D 중 기초연구비 비중 확대

- (목표치) '17년까지 기초연구비 비중을 40%로 확대('12년 35.2%)
- (실적치) '14년도 기준 37.1%(4.7조원) 지원

□ (2015년)

※2016년 발간자료

○ 기초연구비 비중 확대

- (목표치) '17년까지 기초연구비 비중을 40%로 확대('12년 35.2%)
- (실적치) '15년도 기준 38.1%(5.0조원) 지원

□ (2016년)

※2017년 발간자료

○ 기초연구비 비중 확대

- (목표치) '17년까지 기초연구비 비중을 40%로 확대('12년 35.2%)
- (실적치) '16년도 기준 39.1%(5.2조원) 지원

[표 37] 정부 기초·원천연구비 투자 비중

(단위: 조원, %)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정부 R&D예산 | 12.3 | 13.7 | 14.9 | 16.0 | 16.9 | 17.7 | 18.9 | 19.1 |
| 기초연구비 산정대상 예산*(A) | 8.1 | 9.6 | 10.3 | 11.0 | 11.5 | 12.6 | 13.1 | 13.3 |
| 기초연구비(B) (비중: B/A×100) | 2.5 (29.3%) | 3.0 (31.1%) | 3.4 (33.1%) | 3.9 (35.2%) | 4.1 (35.4%) | 4.68 (37.1%) | 5.0 (38.1%) | 5.2 (39.0%) |

* 정부 R&D예산 중 시설장비구축사업 등 연구단계(기초, 응용, 개발) 구분이 곤란한 사업예산 제외

4-2) 성과목표

□ (2013년) 통계분석 시점을 고려하여 '12년 실적치 사용 (2014년 발간자료)

○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 실적(5년주기)

- (목표치) '17년까지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세계 10위권 달성
 - ※ '11년 1,268편(세계 15위) → '17년 5,000편(세계 10위)
- (실적치) '12년도 기준 총 1,536편(세계 15위)

○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연구자 육성 실적

- (목표치) '17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선도연구자 100명 이상 육성
 - ※ '11년 49명 → '17년 100명 이상(SCI 피인용 상위 0.1% 논문 주저자)
- (실적치) '12년도 기준 총 70명
 - ※ 일반적으로 SCI는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지칭
 - ※ 출처 :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한국연구재단), ESI(Essential Science indicators) 2002~2012 등

□ (2014년) 통계분석 시점을 고려하여 '13년 실적치 사용 (2015년 발간자료)

○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 실적(5년 주기)

- (목표치) '17년까지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세계 10위권 달성
 - ※ '11년 1,268편(세계 15위) → '17년 5,000편(세계 10위)
- (실적치) '13년도 기준 총 1,780편(세계 15위)

○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연구자 육성 실적

- (목표치) '17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선도연구자 100명 이상 육성
 - ※ '11년 49명 → '17년 100명 이상(SCI 피인용 상위 0.1% 논문 주저자)
- (실적치) '13년도 기준 총 75명
 - ※ 일반적으로 SCI는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지칭
 - ※ 출처 :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한국연구재단), ESI(Essential Science indicators) 2002~2012 등

□ (2015년) 통계분석 시점을 고려하여 '14년 실적치 사용 (2016년 발간자료)

○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 실적(5년 주기)

- (목표치) '17년까지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세계 10위권 달성

※ '11년 1,268편(세계 15위) → '17년 5,000편(세계 10위)

- (실적치) '14년도 기준 총 2,093편(세계 14위)

○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연구자 육성 실적

- (목표치) '17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선도연구자 100명 이상 육성

※ '11년 49명 → '17년 100명 이상(SCI 피인용 상위 0.1% 논문 주저자)

- (실적치) '14년도 기준 총 79명

※ 일반적으로 SCI는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를 포함하는 개념

※ 출처: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한국연구재단), ESI(Essential Science indicators) 2002~2012 등

□ (2016년) 통계분석 시점을 고려하여 '15년 실적치 사용 (2017년 발간자료)

○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 실적(5년 주기)

- (목표) '17년까지 SCI 피인용 상위 1% 논문수 세계 10위권 달성

※ '11년 1,268편(세계 15위) → '17년 5,000편(세계 10위)

- (실적) '15년도 기준 총 2,243편(세계 15위)

○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연구자 육성 실적

- (목표) '17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선도연구자 100명 이상 육성

※ '11년 49명 → '17년 100명 이상(SCI 피인용 상위 0.1% 논문 주저자)

- (실적) '15년도 기준 총 91명

※ 일반적으로 SCI는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를 포함하는 개념

※ 출처: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한국연구재단), ESI(Essential Science indicators) 2005~2015 등

3-2. 기술 분야

3-2-1 [미래부-現 과기부]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1) 점검·평가 대상 기관 및 사업

- **(2012-2013년)** 점검평가 자료는 위 항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 않음
- **(2014년)** 나노분야 총 투자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처 및 정부출연기관의 사업
 - * 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 ** 정부출연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KIST, 기초과학지원(연), 생공(연), 원자력(연), 표준(연), 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고등과학원, KAIS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기초과학연구원), 화학(연), 산업기술연구회, 재료(연), 기계(연), 생기(연), 전기(연), 전자통신(연)
- **(2015년)** 나노분야 총 투자액이 10억 원 이상인 부처 및 정부출연기관의 사업
 - * 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 ** 정부출연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표준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 **(2016년)** 나노분야 총 투자액이 10억원 이상인 부처* 및 정부출연기관**의 사업
 - * 부처(10)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 ** 정부출연기관(11)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표준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2) 추진경과

□ 2012년

- 2001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01~'10) 수립 ('01.7월, 제8회 국과위)
- 200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 ('02.12월)
- 2005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06~'15) 수립 ('05.12월, 제19회 국과위)
- 2011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1~'20) 수립 ('11.4월, 제2회 국과위)
- 2013.4 2013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수립 ('13.4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추진절차

[표 38] 2012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절차

| | | |
|--|------------|---|
|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 2012.10월 | 교육과학기술부→관계부처 등 |
| ↓ | | |
| 부처별·기관별 전년도 추진실적 및 '13년도 시행계획 수립·제출 | 2013.2월 | 관계부처→교육과학기술부 ※ '12년도 추진실적은 '13.31까지 제출 ※ '13년도 시행계획은 '12.12.31. 까지 제출 |
| ↓ | | |
| 박근혜정부 출범 | 2013.2.25. | 정부조직개편(2013.3.23.) |
| ↓ | | |
| 부처별 추가 계획 보완 | 2013.4월 | - |
| ↓ | | |
| 시행계획(안) 마련 | 2013.5월말 | 미래창조과학부 |
| ↓ | | |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확정(운영위) | 2013.6월 | - |
| ↓ | | |
| 확정통보 | 2013.6월말 | 미래창조과학부→관계부처 등 |

□ 2013년

- 2001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01~'10) 수립 ('01.7월, 제8회 국과위)
- 200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 ('02.12월)
- 2005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06~'15) 수립 ('05.12월, 제19회 국과위)
- 2011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1~'20) 수립 ('11.4월, 제2회 국과위)
- 2014.4 2014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보고 ('14.4월, 국과심)
- 추진절차

[표 39] 2013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절차



□ 2014년

- 200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 (12월)
- 2011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1~'20) 수립 ('11.4월, 제2회 국과위)
- 2015 2015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보고 ('15.4월, 국과심)

□ 2015년

- 200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 (12월)
- 2016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6~'25) 수립 ('16.4.11, 국과심)
- 2016 2016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보고 ('16.4.27, 국과심 운영위)

□ 2016년

- 200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 (12월)
- 2016 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16~'25) 수립 ('16.4.11, 국과심)
- 2017 2017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 보고('17.3.14, 국과심 운영위)

3) 평가 지표

□ 2012년

- 10개 평가지표
- 6대* 인프라 활용건수

* 나노종합기술원(KAIST), 한국나노기술원(수원),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대구나노융합실용화센터

□ 2013년

- (지표삭제) 2012년과 비교하여 6대* 인프라 활용건수, 대학 나노학과 수, 기술이전 건수 지표가 삭제 됨.
- 2012년도의 평가체계를 유지하면서 지표를 투입, 산출, 경쟁력으로 분류
- SCI논문 피인용도, 나노과학기술경쟁력 지표 추가

※ 해당 지표는 2010년도의 실적을 조사하였으므로 당시에 평가지표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2년도에는 평가지표에서 삭제되었다가 2013년도에 재투입된 것으로 보임

□ **2014 - 2015년**

- 2013년도 평가지표를 유지

□ **2016년**

- (지표통합) 평가지표를 과학기술 발전지표와, 산업화 발전 지표로 통합
- (지표신설) 산업화 발전 지표에 나노융합제품 매출비중과 나노융합산업 종사자 수 지표 추가

[표 40]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의 평가지표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 | | |
|--------------------|------------|-------|------------------------------|------------------------|-------|------------------------------|---------------|-------|------------------------------|--------------------|--------------|------------------------------|--------------------------------|
| 지표 | 실적 | 지표 | 실적 | 지표 | 실적 | 지표 | 실적 | 지표 | 실적 | | | | |
| 나노분야 정부 R&D 투자 | 2,834억 원 | 투입 | 나노분야 정부 R&D투자 (정부R&D투자 중 비중) | 5,245억 원 (3.1%) | 투입 | 나노분야 정부 R&D투자 (정부R&D투자 중 비중) | 5,313억 원 (3%) | 투입 | 나노분야 정부 R&D투자 (정부R&D투자 중 비중) | 5,457억 원 (3%) | 과학 기술 발전 지표 | 나노분야 정부 R&D투자 (정부R&D투자 중 비중) | 5,181억 원 (2.7%) |
| 환경·보건·안전(EHS)투자 비중 | 4.60% | | 나노분야 정부 총투자 중 나노 EHS투자 비중 | 159억원 (3%) | | 나노분야 정부 총투자 중 나노EHS투자 비중 | 123억원 (2.3%) | | 나노분야 정부 총투자 중 나노 EHS투자 비중 | 146억원 (2.7%) | | 나노과학 기술수준 (미국100) | 81% |
| 나노분야 핵심연구 인력수 | 8,719명 | 인력 양성 | 핵심연구인력 | 8,158명 | 인력 양성 | 핵심연구인력 | 8,548명 ('14) | 인력 양성 | 핵심연구인력 | 9,142명 ('15) | 핵심연구인력 | 9,142명 ('15) | |
| SCI논문게재 국가 순위 (3위) | 4736편 (3위) | | SCI게재 논문 수 | 5,007편 ('13) | | SCI게재 논문 수 | 5,584편 ('14) | | SCI게재 논문 수 | 8,787편 ('15) | | 미국특허청 등록수 | 731건 (3위) |
| 미국특허등록 국가 순위 (3위) | 913편 (3위) | 산출 논문 | SCI 논문 피인용도 (5년 주기별) | 7.35 (7위) | 산출 논문 | SCI 논문 피인용도 (5년 주기별) | 8.45 (6위) | 산출 논문 | SCI 논문 피인용도 (5년 주기별) | 8.98편 (5위) | 산업화 발전 지표 | 나노융합제품 매출비중 (국내 전산업 10%) | *'16년 산업화 발전지표의 경우 '17년 상반기 발표 |
| 6대* 인프라 활용건수 | 51,099 명 | | 특허 | 미국특허등록 건수 ('11~'13 누적) | | 2,000 ('11~'13 누적) | 특허 | | 미국특허등록건 수 ('11~'14 누적) | 1,812 ('11~'14 누적) | | 특허 | 미국특허등록건 수 ('11~'15 누적) |
| 대학 나노학과 수 | 91개 | 경쟁력 | 나노과학기술 경쟁력(순위) | 4위('12) | 경쟁력 | 나노과학기술경쟁력(순위) | 4위('13) | 경쟁력 | 나노과학기술경쟁력(순위) | 4위('14) | 나노융합산업 종사자 수 | | |
| 국내 나노관련 기업수 | 690개 ('11) | | 나노과학기술 수준 | 76.70% | | 나노과학기술수준 | 76.40% | | 나노과학기술수준 | 81% | | | |
| 미국대비 나노기술 수준 | 81% ('11) | | 나노관련 기업수 | 468개 | | 나노관련 기업수 | 504개 | | 나노관련 기업수 | 541개 | | | |
| 기술이전 건수 | 15건 | | | | | | | | | | | | |

3-3. 종합검토 및 시사점

-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시행계획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추진되나,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시행계획 실적 점검은 시행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추진
- 과학기술분야 주요 시행계획 실적 점검은 R&D투자, 기초연구비 비중, 경쟁력순위, 논문수 등 정량적 지표의 달성도 위주로 추진
 - 과학기술분야 주요 시행계획 실적 점검은 평가의 개념보다는 기본계획의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실적치의 점검에 비중을 두고 수행
-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단순히 정량적 지표의 달성도를 점검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이행 실적의 우수성 평가를 강조
 -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경우, 시행계획 이행실적 점검 과정에서 사업(과제)평가 및 정책평가의 기능을 내포
 - 기본계획, 시행계획, 점검·평가, 자원배분 등의 관련 절차 중 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거시적 성과목표 지표*의 달성도를 관리하는 체계 보완 필요
 - * 예시: 세계 표준특허 점유율(목표치 10%),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목표치 40%), 직무 발명 도입기업 비율(목표치 70%), 저작권 침해율 저감(목표치 10%) 등
-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
 - 점검·평가 추진의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해 관련 중복되는 평가와 차별화하고, '지식재산관점에서 특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 필요
 - 정책적 관점에서 점검·평가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되, 필요시 실적 점검과 평가 업무의 독립적 수행도 검토 가능

4.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

4-1. 점검·평가 대상 과제

- 그간 점검·평가 대상 과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과제 중 일부를 선별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
 -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12년 21개 과제, '13년 35개 과제, '14년 36개 과제, '15년 36개 과제, '16년 38개 과제에 대해 평가 추진(지자체 포함)
 - 그간에는 통상 17개 광역지자체는 자치단체별로 역점과제(1개)만 선정하여 평가하고*, 100여개가 넘는 중앙부처 세부 과제 중 매년 18~21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
 - * 단, '12년에는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과제를 대상으로 16개 광역지자체 공통 평가
 - 이와 같이 제한적인 점검·평가로 인해 전체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시행계획, 자원배분 등과의 연계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17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에서는 전체 세부과제(붙임3)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추진 성과 모니터링 필요
 - 중앙부처의 총 114개 세부과제를 모두 검토 후 전체 세부과제에 대해 각각 평가의견서 작성
 - 17개 광역지자체의 시행계획은 무려 549개의 소규모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각 독립적인 평가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전체 세부과제를 검토하되 17개 지자체 단위로 점검 및 평가의견서 작성이 바람직
 -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점검·평가 대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 평가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일정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 자료 및 평가지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 '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에서는 '추진일정 이행여부', '성과지표 달성여부', '추진실적' 등으로 간소화된 제출자료 요청(붙임4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자료 양식)

4-2. 점검·평가 지표 개선

- 기존의 평가지표는 주로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관점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착안점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방식
 - '16년도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평가지표는 다시 4개의 평가항목과 7개 세부 지표, 17개 체크리스트 등으로 세분화
 -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는 4개 평가 항목, 8개 세부 지표, 19개 체크리스트로 구성
 - 소수의 과제에 대해 매우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고, 평가의견서의 검토항목 및 내용도 17개 체크리스트별로 상세히 기재
- '17년에는 중앙부처 과제 또는 지자체의 지식재산 우수성과 및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추가로 추진체제와 수요 대응성 검토 필요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7년에는 사업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표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매우 커짐
 - 지표 간소화에 대한 수요는 점검·평가 실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소폭의 지표 통합 및 간소화 작업이 꾸준히 지속됨
 - ※ '16년에는 2개 지표를 하나로 통합하고, 1개 지표를 삭제
 - 중앙부처는 4개의 평가 지표와 4개의 평가 항목, 지방자치단체는 5개의 평가 지표와 8개의 평가 항목으로 개선(안) 제시(붙임 5)
- 단순 정량지표 위주의 성과 평가를 지양하고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파급효과까지 감안한 정성평가 강화 필요
-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 수요와 방식, 추진 동력 측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나, 기존의 점검·평가 체계에서는 일부 지표를 통해서만 차별성을 두고 있음
 - 특히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 정책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영 관점의 컨설팅 관점 강화 필요

4-3. 점검·평가 체계 개선

- 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기간('12~'16)에 시행된 점검·평가에서는 점검·평가를 위한 정책평가단 분과를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지자체 등으로 구성
 - 기존 평가 체계의 분과 구성은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자원배분과의 연계 취약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7년 점검·평가에서는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반영한 분과로 구성하는 편이 바람직
 - ※ 고품질 IP, 중소기업 IP, 글로벌 IP, 디지털환경 저작권, IP 생태계, 지자체 등으로 분과 구성
- 평가 대상 기관(정부·지자체)이나 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객관성·신뢰성 있는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정책평가단 구성

4-4. 점검·평가 결과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과제별 점검·평가 최종 결과에서 '개선필요' 등급 부여를 지양하고, 평가 등급을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구분
 - '개선필요' 과제의 실질적 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 및 지자체 수용성을 저해
 - ※ 단, 모든 과제에 대해 '개선 필요 및 권고 사항'을 평가 세부 지표 항목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제시
 - 우수한 과제에 대한 보상 강화(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우수 사례 및 모델의 발굴과 확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수'로만 구분되던 평가 등급을 '최우수', '우수'로 세분화하여 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는 국가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에 투자확대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 연계 강화 유인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에서 최우수·우수 과제 및 총괄적 평가 도출을 통한 자원배분방향의 투자확대 의견 제시
 - ※ 최우수·우수 세부과제와 연계된 과제정보는 정부 예산사업명으로 제시
 -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언론홍보, 우수 지자체 현판 제공,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상 수여 등 포상 및 적극적 홍보 방안 도입 필요
- 중앙부처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방안은 지식재산 시행계획 전체,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전략별, 부처의 과제별로 정리하여 각 부처에 환류
 -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지자체별로 IP경영 평가 위주의 평가를 시행하고, 지자체별 개선 방안에 대해 각 지자체에 환류
- 사업 개선 사안 등 점검·평가 결과의 충실한 반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차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자원배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 시행계획 수립, 점검·평가, 자원배분방향 수립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유기적인 연계 노력 강화 필요

참고문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201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정책컨설팅, 201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정책컨설팅, 201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12~'16) 및 '16년도 시행계획 점검·진단 연구, 201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

미래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2016년도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7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2013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2013년도 추진실적(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2014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2014년도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5

미래창조과학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7)』 2015년도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5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5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7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3~'17) 2015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5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3~2017) 2014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6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3~2017) 2017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과학기술기본계획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20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과학기술기본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20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2017

[부록 1]

2015년도 시행계획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중앙행정기관]

(1)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 (3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 1-1.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정책효과, 장·단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분석 후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였는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정책내용 및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11" style="text-align: center;"> ㉠ 정책효과 등 사전분석 및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여부 ㉡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탁월</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우수</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보통</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미흡</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저조</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able> <p>탁월 : ㉠, ㉡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 ㉡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 ㉡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 ㉡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 ㉡ 모두 미흡한 수준</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p>㉠ 사전분석 및 대비책 수립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OT 분석, PESTLE 분석 및 BC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 또는 종합적·구체적인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였는지 * PESTLE 분석 : 정책대안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SWOT', 'BC분석' 등 분석기법 명칭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실제 분석 내용이 증빙될 경우 폭넓게 인정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를 하였는지 - 정책대상자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분석이 충분한지 | ㉠ 정책효과 등 사전분석 및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여부 ㉡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저조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정책효과 등 사전분석 및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여부 ㉡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저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결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는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실시한 분석도 인정 -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관련 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충분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정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당청 등 관련 기관 간 협의는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간 협의 없이 정책발표를 하여 차질을 빚었는지, 유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소홀히 하여 추진 지연 및 혼란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에 시행한 협의도 인정 <p>㉞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방식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 대상기관의 적정성 및 대상기관 선정방식의 적정성 여부 * 보조금, 용자,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방식의 적정성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의지, 예산 확보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의 적정성 |
| 평가근거/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분석 자료, 회의개최 실적, 설문조사 결과자료 등 ○ 정책추진 세부 내용(대상, 방법, 추진체계 등) |

평가기준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10점)

측정방법
및 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 목표치 설정의 논리성 및 적극성

| 탁월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저조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탁월 : ㉠, ㉡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 ㉡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 ㉡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 ㉡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 ㉡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판단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과 직접적·구체적 관련이 있는지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지
- 성과지표 측정에 사용된 근거자료에 신뢰성·타당성*이 있는지

* 예) 수요자 만족도가 성과지표인 경우,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의 적정성·편향되지 않은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 중요

- 성과지표가 정책효과성까지 감안하여 설정되었는지
- 성과지표 설정 전 충분한 사전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사례연구, 통계파악,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

㉡ 목표치 설정의 논리성 및 적극성 판단

-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고 과거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수년간(2~3년) 실적치 추세를 보았을 때 적극적 목표인지,
-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신규사업인 경우)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 목표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목표치 설정 적극성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기준은 이하의 [참고] 참조

평가근거/
자료

○ 기관별 시행계획 성과지표 및 설정 근거 자료 등

【참고】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판단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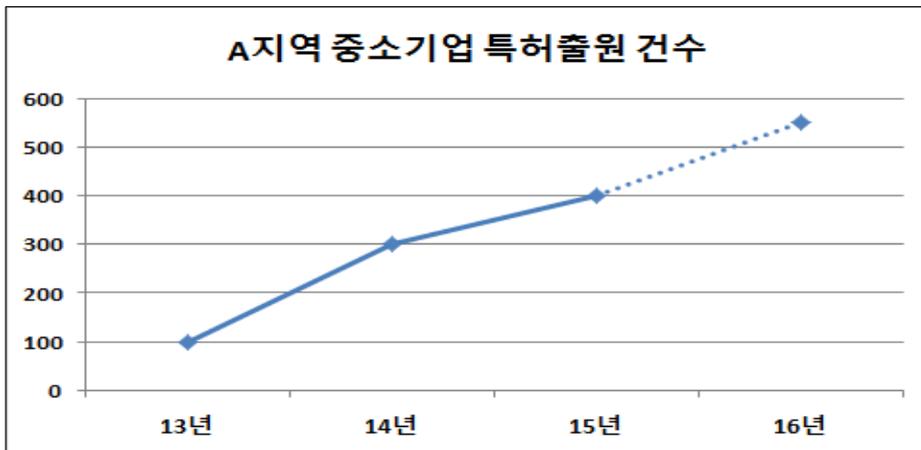
※ 이하의 측정기준은 평가단 및 피평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평가는 전반적 정책추진 상황 및 정책환경,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 평가대상 과제와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기존정책이 있는 경우

①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존재하는 경우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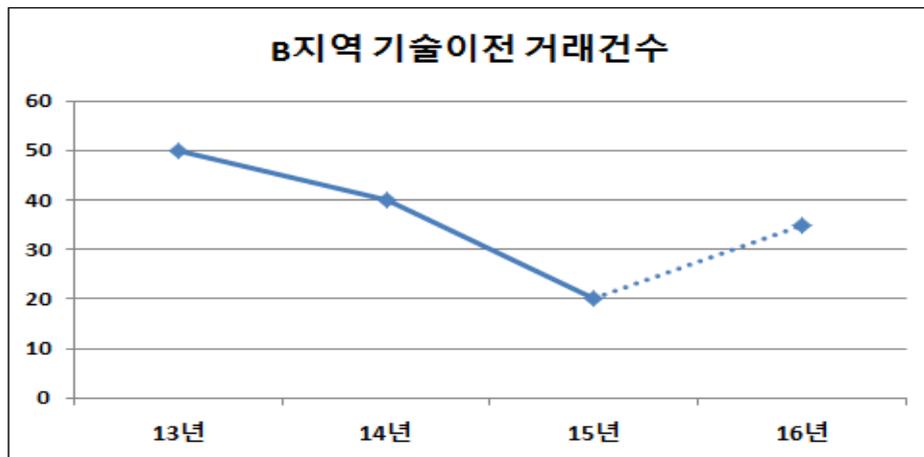
- 전반적 추세치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A지역 중소기업 특허출원 건수



* '13~'15년, 2년간 실적 증가 건수의 평균 $[(200\text{건}+100\text{건})/2=150\text{건}]$ 만큼 전년 대비 목표실적을 상향하여 설정(400건+150건=550건)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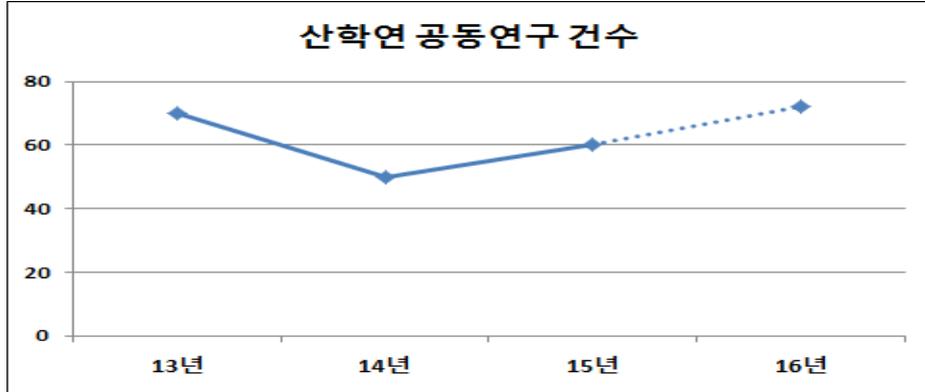
- 최근 수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B지역 기술이전 거래건수



* 3년 연속 실적 하락 상황에서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건수 $[(50\text{건}+40\text{건}+20\text{건})/3= \text{약}37\text{건}]$ 로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등락한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산학연 공동 연구 건수



* 최근 3개년 등락 변화추세에서 상승국면인 '13년~'15년의 증가율(20%)에 맞추어 '16년도 목표치를 설정하면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단,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에는 3개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② 실적치가 2개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인 경우는 상승추세치 반영 시, 하강국면인 경우는 둘 중 높은 실적치 수준으로 설정 시 적극성 인정
- ③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는 경우, 목표치를 전년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적극성 인정

※ 이미 수년 간 상당한 실적을 쌓아서 추세선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예: 시장수요가 포화상태 등), 해당기관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인정

② 신규사업 등 최근 연도의 실적치가 전혀 없는 경우

-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자료,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③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인정
- * 단순히 “법률안 국회 제출 여부”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하며, 난이도가 높고 '16년에 신규로 추진한 법률 제·개정 등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④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국제평가지수 등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 설정도 적극성 인정

평가기준

1-3.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 (10점)

측정방법
및 기준

○ 정책추진·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구축되었는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적절히 구성·운영되었는지, 인적·물적자원의 확보 및 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부되었는지 여부

- ㉠ 정책추진·전달체계와 전담조직의 구성 및 인력의 합리적 설계·구축
- ㉡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된 정도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탁월 : ㉠, ㉡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 ㉡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 ㉡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 ㉡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 ㉡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책추진·전달체계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의 합리적 설계·구축

- 정책추진·전달체계가 정책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효율적·합리적으로 설계·구축되어 있는지
- 중앙행정기관과 하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적정한지
- 민간업무 위탁 여부 및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지정 여부
- * 조직의 범위는 하위운영 기관, 지자체, 민간(자문위원회), 관련 센터 등 포함

㉡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된 정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확보하였는지
-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시기에 관련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였는지
- 관련 자원이 정책효과성, 우선순위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원분담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인력투입을 모두 고려하고, 재정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판단

평가근거/
자료

- 정책추진체계, 담당조직 및 인력현황 설명자료, 추진지침 등
- 최근 수년간 예산편성 및 전담인력 지정 추이, 대상별·분기별 예산 지출 현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배분 자료 등

(2) 정책추진 효율성 (20점)

| 평가기준 | 2-1.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유관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충실하게 운영한 정도와 그 성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①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p> <p>② 유관기관·정책 관련 협의 성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탁월</th> <th colspan="2">우수</th> <th colspan="2">보통</th> <th colspan="2">미흡</th> <th colspan="2">저조</th> </tr> <tr> <th>10</th><th>9</th><th>8</th><th>7</th><th>6</th><th>5</th><th>4</th><th>3</th><th>2</th><th>1</th><th>0</th> </tr> </thead> </table> <p>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div> <p>①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 해당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기관이나, 유사·연계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을 의미 - 유사·연계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 등을 공유하여 정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 협조체계 구축 시 해당기관의 역할, 참여활동 수준, 정책적 불협화음에 대한 언론보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p>② 유관기관 및 정책 관련 협의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책의 통합 결정, 정보공유를 통한 중복 예방, 정책연계 강화 등 협의결과 구체적 성과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성격상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 관련 기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연계 및 협조체계도 구축 또는 조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 탁월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저조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저조 | | | | | | | | |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 | | | | | | | | |
| 평가근거/ 자료 | ○ 연계·협조체계 구축현황 근거자료, 간담회 개최 등 협의 실적, 검토·반영 결과자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2-2.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 (10점)

측정방법
및 기준

○ 대국민 소통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는지,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①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 및 홍보
- ②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

| 탁월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저조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①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홍보

- 정책수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적절한 피드백 조치를 하였는지
- 효과적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내용을 적기에 홍보하였는지
- 실제 보도실적이 우수하고, 긍정적인 여론의 반응을 이끌어 냈는지
- 비판적·부정적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조치를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②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

-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는지 판단

* 여론조사·전문가 회의, 워크숍·세미나·초청강연, 온라인 홍보, 신문·방송 보도, 홍보 간행물 발간 등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실효성 있는 소통을 했는지 고려

평가근거/
자료

- 여론조사 결과, 피드백 실시 근거, 보도자료, 기사내용, 세미나·워크숍 개최 계획 등
- 교육수행 실적

(3) 정책 모니터링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 3-1.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과제별 추진계획상 일정을 준수하였는지,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p> <table border="1" data-bbox="422 504 1428 712"> <tr> <td colspan="11">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td> </tr> <tr> <td colspan="11">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td> </tr> <tr> <td colspan="2">탁월</td> <td colspan="2">우수</td> <td colspan="3">보통</td> <td colspan="2">미흡</td> <td colspan="2">저조</td> </tr> <tr> <td>10</td><td>9</td><td>8</td><td>7</td><td>6</td><td>5</td><td>4</td><td>3</td><td>2</td><td>1</td><td>0</td> </tr> </table> <p>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p>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 충실하게 완료하였는지 - 추진일정 준수율을 높이고자 의도적으로 추진계획을 지연시킨 사례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p>* 일정준수 정도는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하루만 늦어도 지연’ 식의 기계적 판단을 지양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전반적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인지를 고려하는 정성적 판단 병행</p> <p>* 일정지연이 불가피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가</p> <p>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는지 <p>* 모니터링은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분석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상황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였는지 - 여건·상황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원투입 등을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 | | | | | | | | | | 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근거/자료 | ○ '15년도 시행계획상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실적 증빙자료, 여론조사, 간담회, 국회 지적사항 분석자료, 상황변화 분석·대응자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책성과 및 환류 (40점)

평가지표

4-1. 성과목표 달성도 (20점)

측정방법
및 기준

○ 해당 과제의 추진계획 상 성과목표를 실제 달성한 정도

㉠ 성과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20~17 | 16~13 | 12~9 | 8~5 | 4~0 |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지표의 평가등급과 연동하여 평가

* 1-2 지표의 평가등급이 '미흡', '저조'인 경우 목표달성도와 관계없이 3점을 감점함

탁월 : 목표달성도가 90% 이상~100%이고, 질적으로도 매우 충실

우수 : 목표달성도가 80% 이상~9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충실

보통 : 목표달성도가 70% 이상~80% 미만이고, 질적으로 보통

미흡 : 목표달성도가 60% 이상~7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부실

저조 : 목표달성도가 6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매우 부실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추진계획 대비 성과목표의 실제 달성 정도 판단

*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를 토대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등 선행조건, 달성된 목표의 질적 충실성, 목표달성과 직결된 외생적 변수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정량적 판단) 당초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비율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 비율을 산정

* 단,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그 지표는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지표의 평가등급과 연동하여 평가

예) 과제A(성과지표 a,b)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등급이 '미흡'이고 성과지표 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100%×0.5+50%×0.5)=75%

⇒ 75%는 4-1. 성과목표 달성도 '보통'(12~9점)에서 3점을 감점한 9~6점 범위에서 점수 부여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 비계량적인 경우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 입법 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정책 성숙도)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지식재산 중장기 로드맵의 단계별 정책목표와 부합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학계·전문연구기관 등의 평가, 국민·기업·언론 등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 * 예) 초기(인력, 예산, 시설,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중기(정책추진 최적화 등 시스템 고도화), 성숙기(거버넌스 등 활용,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단계별 정책추진 적정성 평가 |
| 평가근거/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제출 실적자료,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근거자료(필요 시 관련 외생변수에 대한 소명자료 포함) 등 ○ 지식재산 중장기 발전계획 |

평가기준

4-2. 정책 효과성 (15점)

측정방법
및 기준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실제 발생한 정도

㉠ 정책의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15~13 | 12~10 | 9~7 | 6~4 | 3~0 |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책의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정도 판단

-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는지
-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는 없었는지
- 해당 과제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해당 과제의 성과가 관련 분야에 활용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량적 판단 : 시장 영향력(투자 증가, 고용창출 수, 인프라 확대 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가 설문·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

* 정성적 판단 : 학계 및 전문가 의견·논문, 산업계·시민단체 의견, 국제사회 반응, 언론보도 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

* 실적 제출 시까지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기관에서 향후 일정한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여 평가

평가근거/
자료

- 기관제출 실적자료, 정책효과의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근거자료 등

평가기준

4-3. 개선성과 우수성 (5점)

측정방법
및 기준

○ '14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 노력 및 성과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과제 개선노력 및 성과

| 우수 | | 보통 | | 미흡 | |
|----|---|----|---|----|---|
| 5 | 4 | 3 | 2 | 1 | 0 |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과제 개선 노력 및 성과

- 전년도 평가결과, '향후과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반영 여부

- 수립된 계획에 의거하여 실질적 활동을 하였는지

- 해당 과제활동에 따라 구체적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량적 판단 : 과제개선을 위한 투입예산/인력, 성과달성내용과 연계된 성과지표, 과제개선에 따른 정책영향력 (투자 증가, 고용창출 수, 인프라 확대 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 정성적 판단 : 과제개선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모니터링 활동 내용의 체계성, 달성된 성과내용의 유사 사업/기관 대비 우수성 등

* 과제개선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이 구체적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점부여

평가근거/
자료

○ 기관제출 실적자료, 정책 개선 사항 및 개선성과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근거자료 등

2015년도 시행계획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

(1)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 (3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 1-1.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10)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정책효과, 장·단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분석 후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였는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정책내용 및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 colspan="2">① 정책효과 등 사전분석 및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여부</td> </tr> <tr> <td colspan="2">②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탁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보통</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흡</td> <td style="text-align: center;">저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able> <p>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p>① 사전분석 및 대비책 수립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OT 분석, PESTLE 분석 및 BC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 또는 종합적·구체적인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였는지 * PESTLE 분석 : 정책대안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SWOT', 'BC분석' 등 분석기법 명칭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실제 분석 내용이 증빙될 경우 폭넓게 인정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를 하였는지 - 정책대상자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분석이 충분한지 - 분석결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는지 판단 | ① 정책효과 등 사전분석 및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여부 | | ②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① 정책효과 등 사전분석 및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 | | | | | | | |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실시한 분석도 인정 -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관련 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충분한지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정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당청 등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 부처 간 협의 없이 정책발표를 하여 차질을 빚었는지, 유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소홀히 하여 추진 지연 및 혼란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에 시행한 협의도 인정 <p>㉞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방식 및 조건 * 수혜 대상기관의 적정성 및 대상기관 선정방식의 적정성 여부 * 보조금, 용자,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방식의 적정성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 사업추진 의지, 예산 확보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의 적정성 |
| 평가근거/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분석 자료, 회의개최 실적, 설문조사 결과자료 등 ○ 정책추진 세부 내용(대상, 방법, 추진체계 등) |

평가기준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10점)

측정방법
및 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 목표치 설정의 논리성 및 적극

| 탁월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저조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탁월 : ㉠, ㉡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 ㉡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 ㉡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 ㉡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 ㉡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판단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과 직접적·구체적 관련이 있는지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지
- 성과지표 측정에 사용된 근거자료에 신뢰성·타당성*이 있는지

* 예) 수요자 만족도가 성과지표인 경우,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의 적정성·편향되지 않은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 중요

- 성과지표가 정책효과성까지 감안하여 설정되었는지
- 성과지표 설정 전 충분한 사전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사례연구, 통계파악,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

㉡ 목표치 설정의 논리성 및 적극성 판단

-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고 과거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수년간(2~3년) 실적치 추세를 보았을 때 적극적 목표인지,
-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신규사업인 경우)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 과제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 목표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목표치 설정 적극성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기준은 이하의 [참고] 참조

평가근거/
자료

- 기관별 시행계획 성과지표 및 설정 근거 자료 등

【참고】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판단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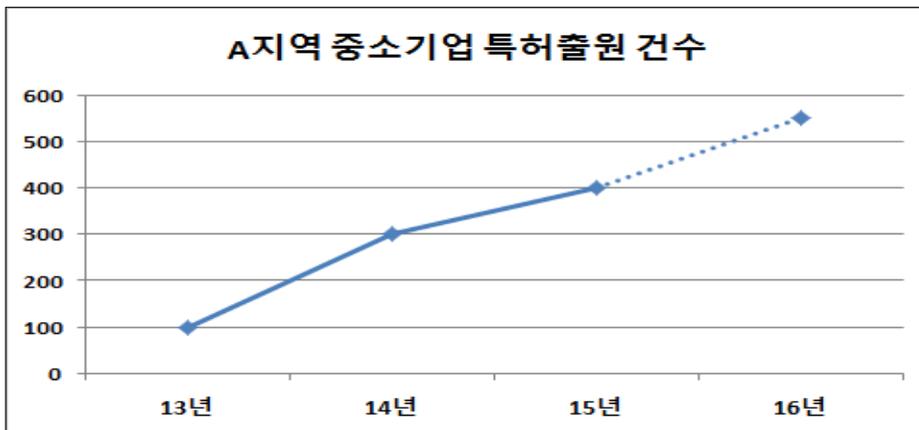
※ 이하의 측정기준은 평가단 및 피평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평가는 전반적 정책추진 상황 및 정책환경,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 평가대상 과제와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기존정책이 있는 경우

①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존재하는 경우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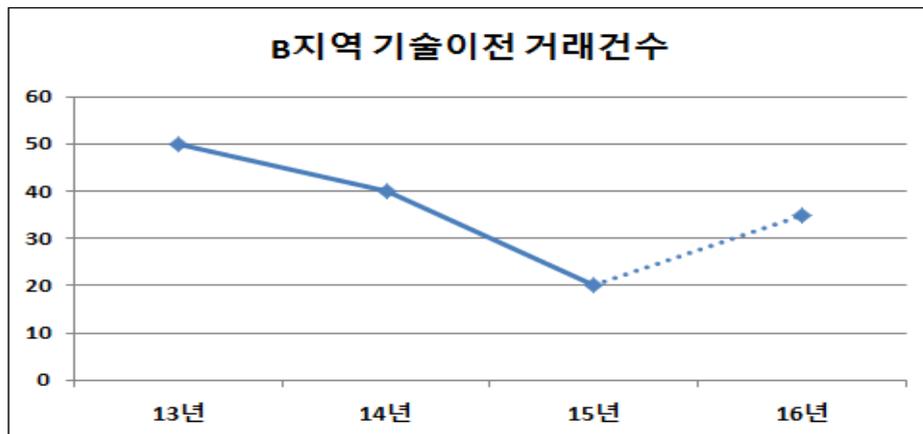
- 전반적 추세치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A지역 중소기업 특허출원 건수



* '13~'15년, 2년간 실적 증가 건수의 평균 $[(200\text{건}+100\text{건})/2=150\text{건}]$ 만큼 전년 대비 목표실적을 상향하여 설정(400건+150건=550건)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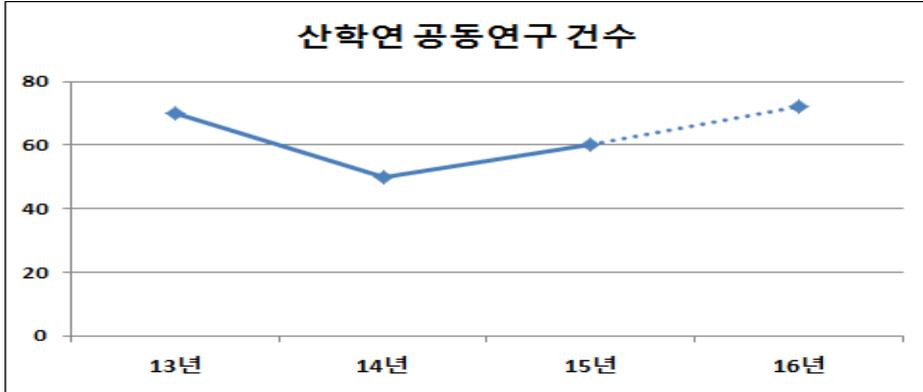
- 최근 수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B지역 기술이전 거래건수



* 3년 연속 실적 하락 상황에서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건수 $[(50\text{건}+40\text{건}+20\text{건})/3= \text{약}37\text{건}]$ 로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등락한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산학연 공동 연구 건수



* 최근 3개년 등락 변화추세에서 상승국면인 '13년~'15년의 증가율(20%)에 맞추어 '16년도 목표치를 설정하면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단,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에는 3개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② 실적치가 2개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인 경우는 상승추세치 반영 시, 하강국면인 경우는 둘 중 높은 실적치 수준으로 설정 시 적극성 인정
- ③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는 경우, 목표치를 전년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적극성 인정

※ 이미 수년 간 상당한 실적을 쌓아서 추세선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예: 시장수요가 포화상태 등), 해당기관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인정

② 신규사업 등 최근 연도의 실적치가 전혀 없는 경우

-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자료,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③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인정
- * 단순히 “법률안 국회 제출 여부”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하며, 난이도가 높고 '16년에 신규로 추진한 법률 제·개정 등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④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국제평가지수 등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 설정도 적극성 인정

평가기준

1-3.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 (10점)

측정방법
및 기준

- 정책추진·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구축되었는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적절히 구성·운영되었는지, 인적·물적자원의 확보 및 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부되었는지 여부

① 정책추진·전달체계와 전담조직의 구성 및 인력의 합리적 설계·구축

②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된 정도

| 탁월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저조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① 정책추진·전달체계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의 합리적 설계·구축

- 정책추진·전달체계가 정책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효율적·합리적으로 설계·구축되어 있는지
- 중앙행정기관과 하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적정한지
- 민간업무 위탁 여부 및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지정 여부
- * 조직의 범위는 하위운영 기관, 지자체, 민간(자문위원회), 관련 센터 등 포함

②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된 정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확보하였는지
-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시기에 관련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였는지
- 관련 자원이 정책효과성, 우선순위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원분담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인력투입을 모두 고려하고, 재정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판단

평가근거/
자료

- 정책추진체계, 담당조직 및 인력현황 설명자료, 추진지침 등
- 최근 수년간 예산편성 및 전담인력 지정 추이, 대상별·분기별 예산 지출 현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배분 자료 등

평가기준

1-4. 지자체 정책차별성 (5점)

측정방법
및 기준

○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기획·추진 여부

㉠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기획·추진 여부

| | | | | | |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 5 | 4 | 3 | 2 | 1 | 0 |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기획·추진 여부

- 정책기획단계 부터 지역별 정책환경의 특수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반영하였는지

- 주요 정책의 내용이 분석된 지역특수성에 적절히 부합하는지

-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 사업 추진노력이 있는지

*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유사한 경우라도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현지화 전략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였다면 창의적 사업 추진 노력으로 인정

-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기관장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의지가 반영되었는지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지자체 역점추진과제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평가근거/
자료

○ 지자체별 시행계획, 지역별 정책추진 환경분석 자료, 사업계획서, 기관장 지시사항 및 말씀자료, 지역자체추진 IP행사자료 등

(2) 정책추진 효율성 (2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 2-1.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유관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충실하게 운영한 정도와 그 성과</p> <table border="1" data-bbox="405 519 1407 734"> <tr> <td colspan="11">①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td> </tr> <tr> <td colspan="11">② 유관기관·정책 관련 협의 성과</td> </tr> <tr> <td colspan="2">탁월</td> <td colspan="2">우수</td> <td colspan="3">보통</td> <td colspan="2">미흡</td> <td colspan="2">저조</td> </tr> <tr> <td>10</td><td>9</td><td>8</td><td>7</td><td>6</td><td>5</td><td>4</td><td>3</td><td>2</td><td>1</td><td>0</td> </tr> </table> <p>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p>①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p> <p>* 유관기관 : 해당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기관이나, 유사·연계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을 의미</p> <p>- 유사·연계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 등을 공유하여 정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p> <p>- 협조체계 구축 시 해당기관의 역할, 참여활동 수준, 정책적 불협화음에 대한 언론보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p> <p>② 유관기관 및 정책 관련 협의 성과</p> <p>- 관련 정책의 통합 결정, 정보공유를 통한 중복 예방, 정책연계 강화 등 협의결과 구체적 성과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p> <p>* 성격상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p> <p>* 관련 기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연계 및 협조체계도 구축 또는 조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p> | ①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 | | | | | | | | | | ② 유관기관·정책 관련 협의 성과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①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유관기관·정책 관련 협의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근거/자료 | ○ 연계·협조체계 구축현황 근거자료, 간담회 개최 등 협의 실적, 검토·반영 결과자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2-2.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 (10점)

측정방법
및 기준

○ 대국민 소통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는지,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①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 및 홍보
- ②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①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홍보

- 정책수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적절한 피드백 조치를 하였는지
- 효과적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내용을 적기에 홍보하였는지
- 실제 보도실적이 우수하고, 긍정적인 여론의 반응을 이끌어 냈는지
- 비판적·부정적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조치를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②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

-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는지 판단

* 여론조사·전문가 회의, 워크숍·세미나·초청강연, 온라인 홍보, 신문·방송 보도, 홍보 간행물 발간 등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실효성 있는 소통을 했는지 고려

평가근거/
자료

- 여론조사 결과, 피드백 실시 근거, 보도자료, 기사내용, 세미나·워크숍 개최 계획 등
- 교육수행 실적

(3) 정책 모니터링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 3-1.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과제별 추진계획상 일정을 준수하였는지,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p> <table border="1" data-bbox="422 504 1428 705"> <tr> <td colspan="12">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td> </tr> <tr> <td colspan="12">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td> </tr> <tr> <td colspan="2">탁월</td> <td colspan="2">우수</td> <td colspan="3">보통</td> <td colspan="2">미흡</td> <td colspan="2">저조</td> </tr> <tr> <td>10</td><td>9</td><td>8</td><td>7</td><td>6</td><td>5</td><td>4</td><td>3</td><td>2</td><td>1</td><td>0</td> </tr> </table> <p>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p>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 충실하게 완료하였는지 - 추진일정 준수율을 높이고자 의도적으로 추진계획을 지연시킨 사례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일정준수 정도는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하루만 늦어도 지연’ 식의 기계적 판단을 지양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전반적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인지를 고려하는 정성적 판단 병행 * 일정지연이 불가피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가 <p>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는지 * 모니터링은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분석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포함 - 여건·상황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였는지 - 여건·상황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원투입 등을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 | | | | | | | | | | | 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근거/자료 | ○ '15년도 시행계획상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실적 증빙자료, 여론조사, 간담회, 국회 지적사항 분석자료, 상황변화 분석·대응자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책성과 및 환류 (35점)

평가지표

4-1. 성과목표 달성도 (15점)

측정방법
및 기준

○ 해당 과제의 추진계획 상 성과목표를 실제 달성한 정도

㉠ 성과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15~13 | 12~10 | 9~7 | 6~4 | 3~0 |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지표의 평가등급과 연동하여 평가

* 1-2 지표의 평가등급이 '미흡', '저조'인 경우 목표달성도와 관계없이 3점을 감점함

탁월 : 목표달성도가 90% 이상~100%이고, 질적으로도 매우 충실

우수 : 목표달성도가 80% 이상~9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충실

보통 : 목표달성도가 70% 이상~80% 미만이고, 질적으로 보통

미흡 : 목표달성도가 60% 이상~7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부실

저조 : 목표달성도가 6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매우 부실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추진계획 대비 성과목표의 실제 달성 정도 판단

*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를 토대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등 선행조건, 달성된 목표의 질적 충실성, 목표달성과 직결된 외생적 변수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정량적 판단) 당초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비율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 비율을 산정

* 단,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그 지표는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지표의 평가등급과 연동하여 평가

예) 과제A(성과지표 a,b)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등급이 '미흡'이고 성과지표 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100%×0.5+50%×0.5)=75%

⇒ 75%는 4-1. 성과목표 달성도 '보통'(9~7점)에서 3점을 감점한 6~4점 범위에서 점수 부여

| | |
|---------|--|
| | <p>*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 비계량적인 경우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 입법 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p> <p>- (정책 성숙도)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지식재산 중장기 로드맵의 단계별 정책목표와 부합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학계·전문연구기관 등의 평가, 국민·기업·언론 등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p> <p>* 예) 초기(인력, 예산, 시설,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중기(정책추진 최적화 등 시스템 고도화), 성숙기(거버넌스 등 활용,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단계별 정책추진 적정성 평가</p> |
| 평가근거/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제출 실적자료,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근거자료(필요 시 관련 외생변수에 대한 소명자료 포함) 등 ○ 지식재산 중장기 발전계획 |

평가기준

4-2. 정책 효과성 (15점)

측정방법
및 기준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실제 발생한 정도

㉠ 정책의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정도

| | | | |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15~13 | 12~10 | 9~7 | 6~4 | 3~0 |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책의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정도 판단

-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는지
-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는 없었는지
- 해당 과제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해당 과제의 성과가 관련 분야에 활용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량적 판단 : 시장 영향력(투자 증가, 고용창출 수, 인프라 확대 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가 설문·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

* 정성적 판단 : 학계 및 전문가 의견·논문, 산업계·시민단체 의견, 국제사회 반응, 언론보도 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

* 실적 제출 시까지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기관에서 향후 일정한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여 평가

평가근거/
자료

- 기관제출 실적자료, 정책효과의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근거자료 등

평가기준

4-3. 개선성과 우수성 (5점)

측정방법
및 기준

○ '14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 노력 및 성과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과제 개선노력 및 성과

| 우수 | | 보통 | | 미흡 | |
|----|---|----|---|----|---|
| 5 | 4 | 3 | 2 | 1 | 0 |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과제 개선 노력 및 성과

- 전년도 평가결과, '향후과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반영 여부
- 수립된 계획에 의거하여 실질적 활동을 하였는지
- 해당 과제활동에 따라 구체적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량적 판단 : 과제개선을 위한 투입예산/인력, 성과달성내용과 연계된 성과지표, 과제개선에 따른 정책영향력 (투자 증가, 고용창출 수, 인프라 확대 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 정성적 판단 : 과제개선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모니터링 활동 내용의 체계성, 달성된 성과내용의 유사 사업/기관 대비 우수성 등

* 과제개선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이 구체적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점부여

평가근거/
자료

- 기관제출 실적자료, 정책 개선 사항 및 개선성과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근거자료 등

[부록 2]

2016년도 시행계획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중앙행정기관]

(1)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 (30점)

| 평가기준 | 1-1.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10)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정책효과, 장·단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분석 후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였는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정책내용 및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① 정책효과 등 사전분석 및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여부</p> <p>②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탁월</th> <th colspan="2">우수</th> <th colspan="3">보통</th> <th colspan="2">미흡</th> <th colspan="2">저조</th> </tr> <tr> <td>10</td><td>9</td><td>8</td><td>7</td><td>6</td><td>5</td><td>4</td><td>3</td><td>2</td><td>1</td><td>0</td> </tr> </table> </div> <p>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p>① 사전분석 및 대비책 수립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p> <p>[신규과제]</p> <p>- SW○T 분석, PESTLE 분석 및 BC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 또는 종합적·구체적인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였는지</p> <p>* PESTLE 분석: 정책대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p> <p>** 'SW○T', 'BC분석' 등 분석기법 명칭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실제 분석 내용이 증빙될 경우 폭넓게 인정</p>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 | | | |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 | | | | | | | | | |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를 하였는지
- 정책대상자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분석이 충분한지

- 분석결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는지 판단
-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충분한지
 -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정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당청 등 관련 기관 간 협의는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 * 부처 간 협의 없이 정책발표를 하여 차질을 빚었는지, 유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소홀히 하여 추진 지연 및 혼란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계속과제]

-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 최초 정책기획시 SW○T 분석, PESTLE 분석 및 BC 분석 등의 정책관련 사전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사항 인정
- 전년도 평가결과, 자체평가, 내·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는지 판단
- 정책 개선 및 대비책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충분한지
 -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정책 개선 및 대비책 마련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당청 등 관련 기관 간 협의는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 * 부처 간 협의 없이 정책발표를 하여 차질을 빚었는지, 유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소홀히 하여 추진 지연 및 혼란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⑤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

- 사업방식 및 조건
 - * 수혜 대상기관의 적정성 및 대상기관 선정방식의 적정성 여부
 - * 보조금, 용자,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방식의 적정성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 * 사업추진 의지, 예산 확보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의 적정성

측정방법
및 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 | | | | | | | | | |
|---------------------|---|----|---|----|---|---|----|---|----|---|
| ①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 | | | | | | | | |
| ② 목표치 설정의 논리성 및 적극성 |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①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판단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과 직접적·구체적 관련이 있는지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지
- 성과지표 측정에 사용된 근거자료에 신뢰성·타당성*이 있는지

* 예) 수요자 만족도가 성과지표인 경우,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의 적정성·편향되지 않은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 중요

- 성과지표가 정책효과성까지 감안하여 설정되었는지
- 성과지표 설정 전 충분한 사전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사례연구, 통계파악,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

② 목표치 설정의 논리성 및 적극성 판단

-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고 과거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수년간(2~3년) 실적치 추세를 보았을 때 적극적 목표인지,
-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신규사업인 경우)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 목표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목표치 설정 적극성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기준은 이하의 [참고] 참조

【참고】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판단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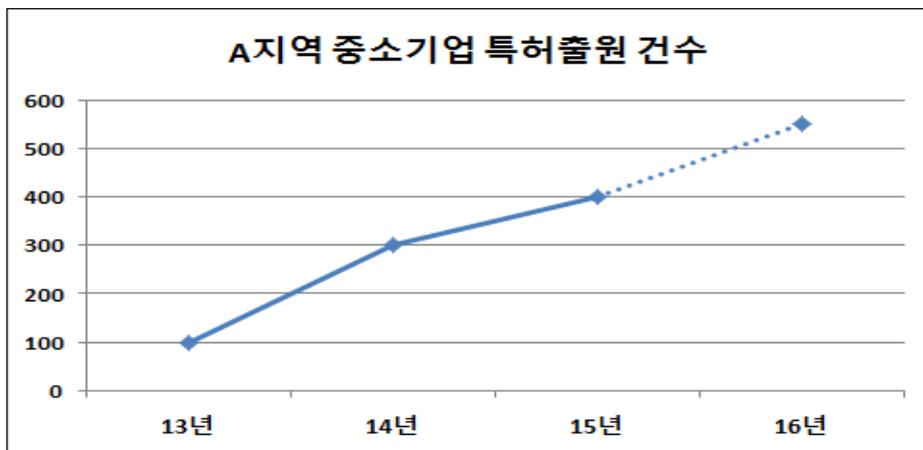
※ 이하의 측정기준은 평가단 및 피평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평가는 전반적 정책추진 상황 및 정책환경,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Ⅰ 평가대상 과제와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기존정책이 있는 경우

①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존재하는 경우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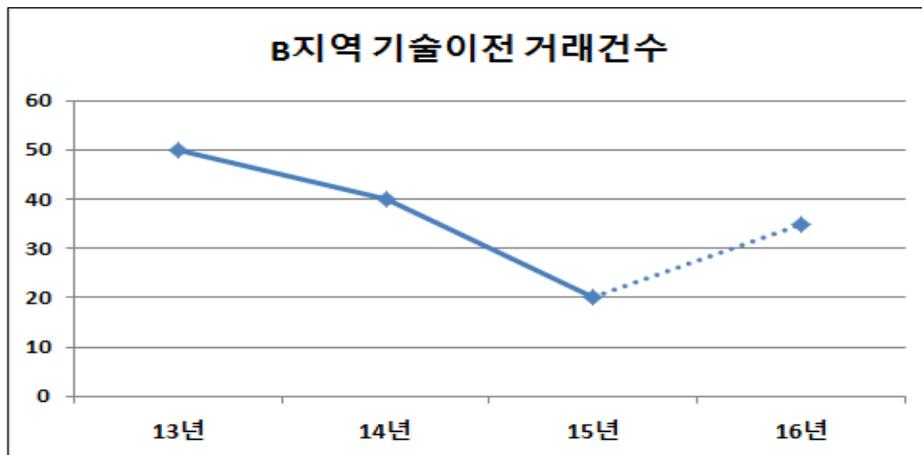
- 전반적 추세치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A지역 중소기업 특허출원 건수



* '13~'15년, 2년간 실적 증가 건수의 평균 $[(200\text{건}+100\text{건})/2=150\text{건}]$ 만큼 전년대비 목표실적을 상향하여 설정(400건+150건=550건)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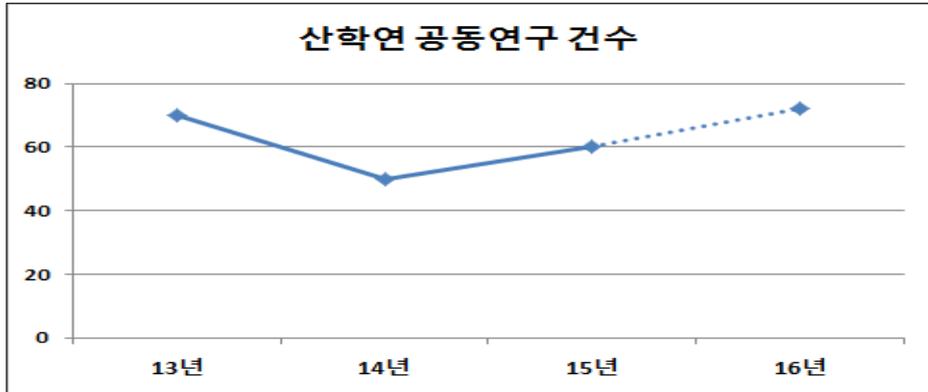
- 최근 수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B지역 기술이전 거래건수



* 3년 연속 실적 하락 상황에서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건수 $[(50\text{건}+40\text{건}+20\text{건})/3= \text{약}37\text{건}]$ 로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등락한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산학연 공동 연구 건수



* 최근 3개년 등락 변화추세에서 상승국면인 '13년~'15년의 증가율(20%)에 맞추어 '16년도 목표치를 설정하면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단,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에는 3개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② 실적치가 2개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인 경우는 상승추세치 반영 시, 하향국면인 경우는 둘 중 높은 실적치 수준으로 설정 시 적극성 인정
- ③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는 경우, 목표치를 전년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적극성 인정

※ 이미 수년 간 상당한 실적을 쌓아서 추세선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예: 시장수요가 포화상태 등), 해당기관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인정

② 신규사업 등 최근 연도의 실적치가 전혀 없는 경우

-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자료,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③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인정
- * 단순히 “법률안 국회 제출 여부”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하며, 난이도가 높고 '16년에 신규로 추진한 법률 제·개정 등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④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국제평가지수 등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 설정도 적극성 인정

평가기준

1-3.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 (10점)

- 정책추진·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구축되었는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적절히 구성·운영되었는지, 인적·물적자원의 확보 및 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부되었는지 여부

① 정책추진·전달체계와 전담조직의 구성 및 인력의 합리적 설계·구축

②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된 정도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① 정책추진·전달체계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의 합리적 설계·구축

- 정책추진·전달체계가 정책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효율적·합리적으로 설계·구축되어 있는지
- 중앙행정기관과 하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적정한지
- 민간업무 위탁 여부 및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지정 여부
- * 조직의 범위는 하위운영 기관, 지자체, 민간(자문위원회), 관련 센터 등 포함

②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된 정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확보하였는지
-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시기에 관련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였는지
- 관련 자원이 정책효과성, 우선순위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원분담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인력투입을 모두 고려하고, 재정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판단

측정방법
및 기준

(2) 정책추진 효율성 (2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 2-1. 교육 및 정책 소통,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20점)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 실시와 대국민 소통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유관기관과 정책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과 그 성과</p> <table border="1" data-bbox="399 582 1404 862"> <tr> <td colspan="5">①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과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 및 홍보</td> </tr> <tr> <td colspan="5">② 유관기관과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성과</td> </tr> <tr> <td>탁월</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저조</td> </tr> <tr> <td>20~17</td> <td>16~13</td> <td>12~9</td> <td>8~5</td> <td>4~0</td> </tr> </table> <p>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p>①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과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 및 홍보</p> <p>[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는지 판단 * 여론조사·전문가 회의, 워크숍·세미나·초청강연, 온라인 홍보, 신문·방송 보도, 홍보 간행물 발간 등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실효성 있는 소통을 했는지 고려 <p>[대국민 소통 및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적절한 피드백 조치를 하였는지 - 효과적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내용을 적기에 홍보하였는지 - 실제 보도실적이 우수하고, 긍정적인 여론의 반응을 이끌어 냈는지 | ①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과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 및 홍보 | | | | | ② 유관기관과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성과 | |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20~17 | 16~13 | 12~9 | 8~5 | 4~0 |
| ①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과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 및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② 유관기관과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 | | | | | | | | | | | | | |
| 20~17 | 16~13 | 12~9 | 8~5 | 4~0 | | | | | | | | | | | | | | | | | |

- 비판적·부정적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조치를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⑥ 유관기관과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성과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 * 유관기관 : 해당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기관이나, 유사 연계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을 의미
- 유사·연계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 등을 공유하여 정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 협조체계 구축 시 해당기관의 역할, 참여활동 수준, 정책적 불협화음에 대한 언론보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유관기관 및 정책 관련 협의 성과]

- 관련 정책의 통합 결정, 정보공유를 통한 중복 예방, 정책연계 강화 등 협의결과 구체적 성과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성격상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 * 관련 기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연계 및 협조체계도 구축 또는 조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3) 정책 모니터링 (10점)

| 평가기준 | 3-1.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상 일정을 준수하였는지,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p>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p> <p>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탁월</th> <th colspan="2">우수</th> <th colspan="3">보통</th> <th colspan="2">미흡</th> <th colspan="2">저조</th> </tr> <tr> <th>10</th><th>9</th><th>8</th><th>7</th><th>6</th><th>5</th><th>4</th><th>3</th><th>2</th><th>1</th><th>0</th> </tr> </thead> </table>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 | | | |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 | | | | | | | | |
| | <p>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p> <p>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p> <p>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p> <p>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p> <p>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p> | | | | | | | | | | | | | | | | | | | | | | |
| |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 | | | | | | | | | | | | | | | | | | | | | |
| | <p>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p>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 충실하게 완료하였는지 - 추진일정 준수율을 높이고자 의도적으로 추진계획을 지연시킨 사례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p>* 일정준수 정도는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하루만 늦어도 지연’ 식의 기계적 판단을 지양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전반적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인지를 고려하는 정성적 판단 병행</p> | | | | | | | | | | | | | | | | | | | | | | |
| | <p>* 일정지연이 불가피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가</p> | | | | | | | | | | | | | | | | | | | | | | |
| <p>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p>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는지 - 여건·상황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였는지 - 여건·상황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원투입 등을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책성과 및 환류 (40점)

| 평가지표 | 4-1. 성과목표 달성도 (20점)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해당 과제의 추진계획 상 성과목표를 실제 달성한 정도</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 colspan="5">㉠ 성과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정도</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탁월</th> <th style="text-align: center;">우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통</th> <th style="text-align: center;">미흡</th> <th style="text-align: center;">저조</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7</td> <td style="text-align: center;">16~13</td> <td style="text-align: center;">12~9</td> <td style="text-align: center;">8~5</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able> <p>탁월 : 목표달성도가 90% 이상~100%이고, 정성평가 및 개선성과 매우 우수 우수 : 목표달성도가 80% 이상~90% 미만이고, 정성평가 및 개선성과 우수 보통 : 목표달성도가 70% 이상~80% 미만이고, 정성평가 및 개선성과 보통 미흡 : 목표달성도가 60% 이상~70% 미만이고, 정성평가 및 개선성과 부실 저조 : 목표달성도가 60% 미만이고, 정성평가 및 개선성과 매우 부실</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p>— 단,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의 평가등급과 연동하여 평가</p> <p>* 1-2 지표의 평가등급이 ‘우수(7~8)’등급이하일 경우 ‘우수’ 등급과 차이 등급만큼 성과목표 달성도 등급 하향 적용 ex)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시 ‘탁월’ 등급이고, ‘1-2’ 지표 등급이 ‘보통’인 경우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 등급에서 점수 부여(1개 등급 하향)</p> <p>㉡ 추진계획 대비 성과목표의 실제 달성 정도 판단</p> <p>*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를 토대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등 선행조건, 달성된 목표의 질적 충실성, 목표달성과 직결된 외생적 변수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p> <p>— (정량적 판단) 당초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비율</p> <p>*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 비율을 산정</p> <p>* 단,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그 지표는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p> <p>예) 과제A(성과지표 a,b)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등급이 ‘미흡’이고 성과지표 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100%×0.5+50%×0.5)=75%</p> | ㉠ 성과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정도 | |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20~17 | 16~13 | 12~9 | 8~5 | 4~0 |
| ㉠ 성과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정도 | | | | | | | | | | | | | | |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 | | | | | | | | |
| 20~17 | 16~13 | 12~9 | 8~5 | 4~0 | | | | | | | | | | | | |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 비계량적인 경우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 입법 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정성적 판단(정책 성숙도))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지식재산 중장기 로드맵의 단계별 정책목표와 부합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학계·전문연구기관 등의 평가, 국민·기업·언론 등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

* 예) 초기(인력, 예산, 시설,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중기(정책추진 최적화 등 시스템 고도화), 성숙기(거버넌스 등 활용,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단계별 정책추진 적정성 평가

측정방법
및 기준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실제 발생한 정도

| ㉠ 정책의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정도 | | | |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15~13 | 12~10 | 9~7 | 6~4 | 3~0 |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책의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정도 판단

-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는지
-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는 없었는지
- 해당 과제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해당 과제의 성과가 관련 분야에 활용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량적 판단 : 시장 영향력(투자 증가, 고용창출 수, 인프라 확대 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가 설문·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

* 정성적 판단 : 학계 및 전문가 의견·논문, 산업계·시민단체 의견, 국제사회 반응, 언론보도 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

* 실적 제출 시까지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기관에서 향후 일정한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여 평가

측정방법
및 기준

○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업 개선 노력 및 성과

|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과제 개선노력 및 성과 | | | | | |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 5 | 4 | 3 | 2 | 1 | 0 |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책 개선 노력 및 성과

- 전년도 지식재산 평가결과, 자체평가(성과분석) 및 타 평가 결과, 감사원 및 국회 등 타 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반영 여부

- 수립된 계획에 의거하여 실질적 활동을 하였는지

- 해당 과제활동에 따라 구체적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량적 판단 : 과제개선을 위한 투입예산/인력, 성과달성내용과 연계된 성과지표, 과제개선에 따른 정책영향력 (투자 증가, 고용창출 수, 인프라 확대 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 정성적 판단 : 과제개선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모니터링 활동 내용의 체계성, 달성된 성과내용의 유사 사업/기관 대비 우수성 등

* 과제개선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이 구체적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점부여

2016년도 시행계획 평가지표별 측정방법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

(1) 지식재산 전략 및 기획 (4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 1-1. 정책기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정책효과, 장·단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분석 후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였는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정책내용 및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10" style="text-align: center;"> ㉠ 정책효과 등 사전분석 및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여부 ㉡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탁월</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우수</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보통</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미흡</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저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r> </table> <p>탁월 : ㉠, ㉡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 ㉡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 ㉡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 ㉡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 ㉡ 모두 미흡한 수준</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p>㉠ 사전분석 및 대비책 수립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p> <p>[신규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T 분석, PESTLE 분석 및 BC 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 또는 종합적·구체적인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였는지 * PESTLE 분석: 정책대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SW○T', 'BC분석' 등 분석기법 명칭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실제 분석 내용이 증빙될 경우 폭넓게 인정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를 하였는지 - 정책대상자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분석이 충분한지 - 분석결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는지 판단 | ㉠ 정책효과 등 사전분석 및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여부 ㉡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저조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정책효과 등 사전분석 및 분석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와 관계부처,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여부 ㉡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저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 | | | | | | | | | | | | | | | | | | |

-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충분한지
 -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정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당청 등 관련 기관 간 협의는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 * 부처 간 협의 없이 정책발표를 하여 차질을 빚었는지, 유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소홀히 하여 추진 지연 및 혼란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계속과제]

-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 최초 정책기획시 SWOT 분석, PESTLE 분석 및 BC 분석 등의 정책관련 사전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사항 인정
- 전년도 평가결과, 자체평가, 내·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개선·보완 사항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는지 판단
- 정책 개선 및 대비책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은 충분한지
 -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정책 개선 및 대비책 마련과 관련하여 관계부처·당청 등 관련 기관 간 협의는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
 - * 부처 간 협의 없이 정책발표를 하여 차질을 빚었는지, 유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소홀히 하여 추진 지연 및 혼란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

㉞ 정책내용,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

- 사업방식 및 조건
 - * 수혜 대상기관의 적정성 및 대상기관 선정방식의 적정성 여부
 - * 보조금, 융자,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방식의 적정성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 * 사업추진 의지, 예산 확보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10점)

측정방법
및 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 목표치 설정의 논리성 및 적극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탁월 : ㉠, ㉡ 모두 우수한 수준
- 우수 : ㉠, ㉡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 보통 : ㉠, ㉡ 모두 통상적 수준
- 미흡 : ㉠, ㉡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 저조 : ㉠, ㉡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판단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과 직접적·구체적 관련이 있는지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지
- 성과지표 측정에 사용된 근거자료에 신뢰성·타당성*이 있는지

* 예) 수요자 만족도가 성과지표인 경우,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의 적정성·편향되지 않은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 중요

- 성과지표가 정책효과성까지 감안하여 설정되었는지
- 성과지표 설정 전 충분한 사전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사례연구, 통계파악,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

㉡ 목표치 설정의 논리성 및 적극성 판단

-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고 과거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수년간(2~3년) 실적치 추세를 보았을 때 적극적 목표인지,
-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신규사업인 경우)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 목표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목표치 설정 적극성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기준은 이하의 [참고] 참조

평가근거/
자료

- 기관별 시행계획 성과지표 및 설정 근거 자료 등

【참고】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판단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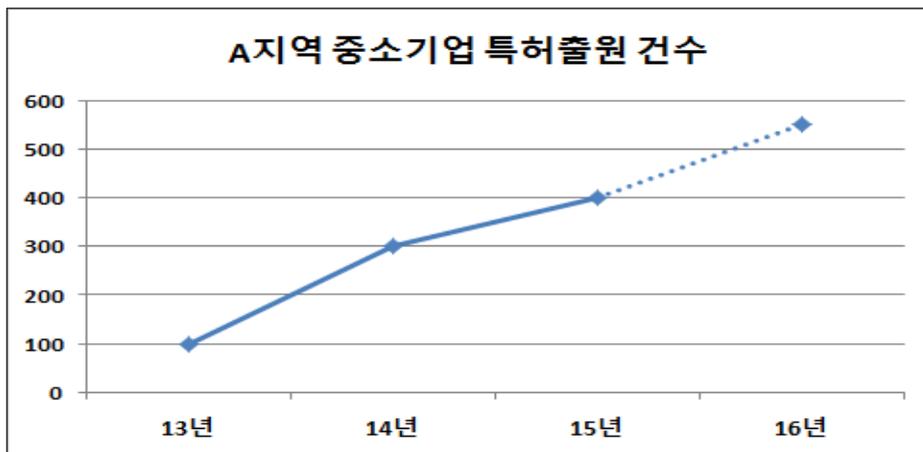
※ 이하의 측정기준은 평가단 및 피평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평가는 전반적 정책추진 상황 및 정책환경,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Ⅰ 평가대상 과제와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기존정책이 있는 경우

①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존재하는 경우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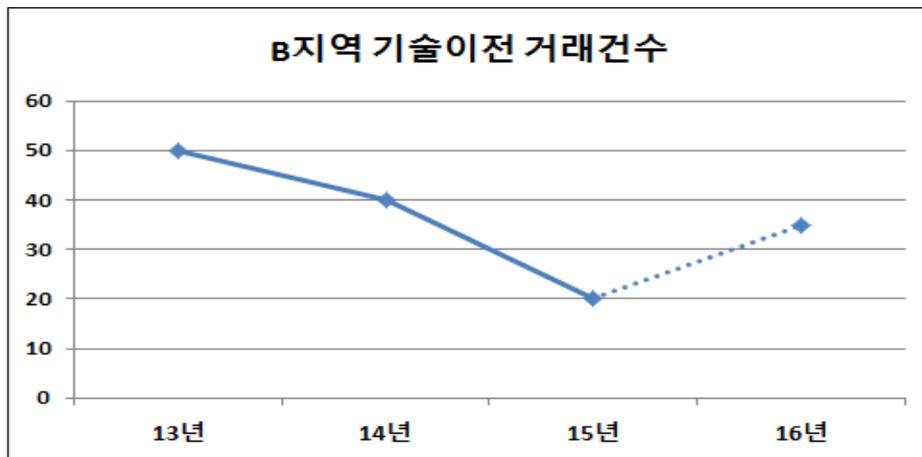
- 전반적 추세치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A지역 중소기업 특허출원 건수



* '13~'15년, 2년간 실적 증가 건수의 평균 $[(200\text{건}+100\text{건})/2=150\text{건}]$ 만큼 전년대비 목표실적을 상향하여 설정(400건+150건=550건)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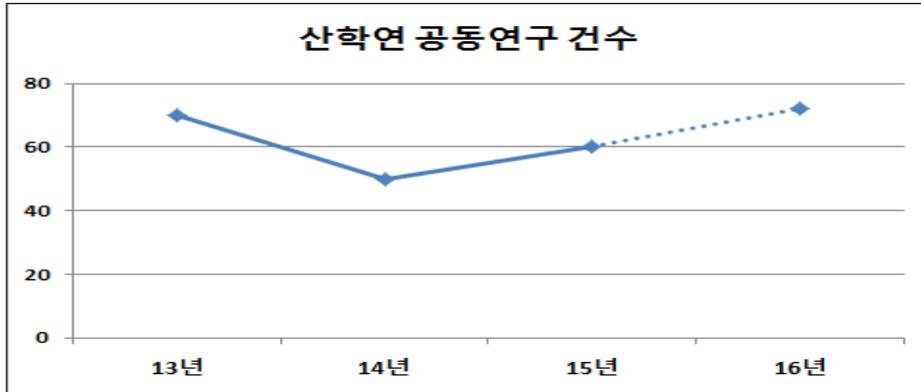
- 최근 수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B지역 기술이전 거래건수



* 3년 연속 실적 하락 상황에서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건수 $[(50\text{건}+40\text{건}+20\text{건})/3= \text{약}37\text{건}]$ 로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등락한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산학연 공동 연구 건수



* 최근 3개년 등락 변화추세에서 상승국면인 '13년~'15년의 증가율(20%)에 맞추어 '16년도 목표치를 설정하면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단,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에는 3개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② 실적치가 2개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인 경우는 상승추세치 반영 시, 하향국면인 경우는 둘 중 높은 실적치 수준으로 설정 시 적극성 인정
- ③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는 경우, 목표치를 전년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적극성 인정

※ 이미 수년 간 상당한 실적을 쌓아서 추세선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예: 시장수요가 포화상태 등), 해당기관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인정

② 신규사업 등 최근 연도의 실적치가 전혀 없는 경우

-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자료,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③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인정
- * 단순히 “법률안 국회 제출 여부”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하며, 난이도가 높고 '16년에 신규로 추진한 법률 제·개정 등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④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국제평가지수 등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 설정도 적극성 인정

평가기준

1-3.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 (10점)

- 정책추진·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구축되었는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적절히 구성·운영되었는지, 인적·물적자원의 확보 및 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부되었는지 여부

- ㉠ 정책추진·전달체계와 전담조직의 구성 및 인력의 합리적 설계·구축
- ㉡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된 정도

| 탁월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저조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탁월 : ㉠, ㉡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 ㉡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 ㉡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 ㉡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 ㉡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측정방법
및 기준

㉠ 정책추진·전달체계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의 합리적 설계·구축

- 정책추진·전달체계가 정책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효율적·합리적으로 설계·구축되어 있는지
- 중앙행정기관과 하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적정한지
- 민간업무 위탁 여부 및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지정 여부
- * 조직의 범위는 하위운영 기관, 지자체, 민간(자문위원회), 관련 센터 등 포함

㉡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된 정도

[예산확보 및 배분, 집행의 적정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확보하였는지
-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시기에 관련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였는지

- 관련 자원이 정책효과성, 우선순위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원분담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인력투입을 모두 고려하고, 재정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판단

[정책관심도(예산비율 및 증감률)]

- 지자체의 지재권 확보 및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 지식재산 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력과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는지
 - * 평가과제 관련 예산 증가율, 전체 지식재산 정책 예산 증가율
 - *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배정 비율(지자체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비율)
 - * 지식재산 예산 비율은 지자체의 자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적극성과 노력도를 판단
- 중앙기관과 매칭 예산(50:50) 이외 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는지

측정방법
및 기준

○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기획·추진 여부

㉠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기획·추진 여부

| | | | | | |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 5 | 4 | 3 | 2 | 1 | 0 |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기획·추진 여부

- 정책기획단계 부터 지역별 정책환경의 특수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반영하였는지
 - 주요 정책의 내용이 분석된 지역특수성에 적절히 부합하는지
 -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 사업 추진노력이 있는지
- *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유사한 경우라도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현지화 전략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였다면 창의적 사업 추진 노력으로 인정
-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기관장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의지가 반영되었는지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지자체 역점추진과제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정책추진 효율성 (15점)

평가기준

2-1. 교육 및 정책 소통,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15점)

측정방법
및 기준

-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 실시와 대국민 소통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유관기관과 정책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과 그 성과

㉠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과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 및 홍보

㉡ 유관기관과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성과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15~13 | 12~10 | 9~7 | 6~4 | 3~0 |

탁월 : ㉠, ㉡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 ㉡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 ㉡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 ㉡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 ㉡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과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 및 홍보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

-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는지 판단

* 여론조사·전문가 회의, 워크숍·세미나·초청강연, 온라인 홍보, 신문·방송 보도, 홍보 간행물 발간 등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실효성 있는 소통을 했는지 고려

[대국민 소통 및 홍보]

- 정책수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적절한 피드백 조치를 하였는지

- 효과적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내용을 적기에 홍보하였는지

- 실제 보도실적이 우수하고, 긍정적인 여론의 반응을 이끌어 냈는지
- 비판적·부정적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조치를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⑥ 유관기관과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성과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 * 유관기관 : 해당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기관이나, 유사·연계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을 의미
- 유사·연계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 등을 공유하여 정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 협조체계 구축 시 해당기관의 역할, 참여활동 수준, 정책적 불협화음에 대한 언론보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유관기관 및 정책 관련 협의 성과]

- 관련 정책의 통합 결정, 정보공유를 통한 중복 예방, 정책연계 강화 등 협의결과 구체적 성과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성격상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 * 관련 기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연계 및 협조체계도 구축 또는 조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3) 정책 모니터링 (10점)

| 평가기준 | 3-1.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상 일정을 준수하였는지,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p>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p> <p>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탁월</th> <th colspan="2">우수</th> <th colspan="3">보통</th> <th colspan="2">미흡</th> <th colspan="2">저조</th> </tr> <tr> <th>10</th><th>9</th><th>8</th><th>7</th><th>6</th><th>5</th><th>4</th><th>3</th><th>2</th><th>1</th><th>0</th> </tr> </thead> </table>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 | | | |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 | | | | | | | | |
| | <p>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p> <p>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p> <p>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p> <p>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p> <p>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p> | | | | | | | | | | | | | | | | | | | | | | |
| |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 | | | | | | | | | | | | | | | | | | | | | |
| | <p>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p>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 충실하게 완료하였는지 - 추진일정 준수율을 높이고자 의도적으로 추진계획을 지연시킨 사례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 <p>* 일정준수 정도는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하루만 늦어도 지연’ 식의 기계적 판단을 지양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전반적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인지를 고려하는 정성적 판단 병행</p> | | | | | | | | | | | | | | | | | | | | | | |
| | <p>* 일정지연이 불가피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가</p> | | | | | | | | | | | | | | | | | | | | | | |
| <p>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p>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는지 - 여건·상황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였는지 - 여건·상황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원투입 등을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책성과 및 환류 (35점)

평가지표

4-1. 성과목표 달성도 (15점)

측정방법
및 기준

○ 해당 과제의 추진계획 상 성과목표를 실제 달성한 정도

㉠ 성과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15~13 | 12~10 | 9~7 | 6~4 | 3~0 |

탁월 : 목표달성도가 90% 이상~100%이고, 정성평가 및 개선성과 매우 우수

우수 : 목표달성도가 80% 이상~90% 미만이고, 정성평가 및 개선성과 우수

보통 : 목표달성도가 70% 이상~80% 미만이고, 정성평가 및 개선성과 보통

미흡 : 목표달성도가 60% 이상~70% 미만이고, 정성평가 및 개선성과 부실

저조 : 목표달성도가 60% 미만이고, 정성평가 및 개선성과 매우 부실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단,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의 평가등급과 연동하여 평가

* 1-2 지표의 평가등급이 '우수(7~8)'등급이하일 경우 '우수' 등급과 차이 등급만큼 성과목표 달성도 등급 하향 적용

ex)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시 '탁월' 등급이고, '1-2' 지표 등급이 '보통'인 경우 성과목표 달성도 '우수' 등급에서 점수 부여(1개 등급 하향)

㉡ 추진계획 대비 성과목표의 실제 달성 정도 판단

*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를 토대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등 선행조건, 달성된 목표의 질적 충실성, 목표달성과 직결된 외생적 변수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정량적 판단) 당초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비율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 비율을 산정

* 단,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그 지표는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

예) 과제A(성과지표 a,b)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등급이 '미흡'이고 성과지표 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100%×0.5+50%×0.5)=75%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 비계량적인 경우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 입법 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정성적 판단(정책 성숙도))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지식재산 중장기 로드맵의 단계별 정책목표와 부합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학계·전문연구기관 등의 평가, 국민·기업·언론 등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

* 예) 초기(인력, 예산, 시설,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중기(정책추진 최적화 등 시스템 고도화), 성숙기(거버넌스 등 활용,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단계별 정책추진 적정성 평가

측정방법
및 기준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실제 발생한 정도

| ㉠ 정책의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정도 | | | |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15~13 | 12~10 | 9~7 | 6~4 | 3~0 |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책의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정도 판단

-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는지
-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는 없었는지
- 해당 과제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해당 과제의 성과가 관련 분야에 활용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량적 판단 : 시장 영향력(투자 증가, 고용창출 수, 인프라 확대 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가 설문·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

* 정성적 판단 : 학계 및 전문가 의견·논문, 산업계·시민단체 의견, 국제사회 반응, 언론보도 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

* 실적 제출 시까지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기관에서 향후 일정한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여 평가

측정방법
및 기준

○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업 개선 노력 및 성과

|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과제 개선노력 및 성과 | | | | | |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 5 | 4 | 3 | 2 | 1 | 0 |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책 개선 노력 및 성과

- 전년도 지식재산 평가결과, 자체평가(성과분석) 및 타 평가 결과, 감사원 및 국회 등 타 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반영 여부

- 수립된 계획에 의거하여 실질적 활동을 하였는지

- 해당 과제활동에 따라 구체적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량적 판단 : 과제개선을 위한 투입예산/인력, 성과달성내용과 연계된 성과지표, 과제개선에 따른 정책영향력 (투자 증가, 고용창출 수, 인프라 확대 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 정성적 판단 : 과제개선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모니터링 활동 내용의 체계성, 달성된 성과내용의 유사 사업/기관 대비 우수성 등

* 과제개선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이 구체적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점부여

평가기준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10점)

측정방법
및 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 목표치 설정의 논리성 및 적극성

| 탁월 | | 우수 |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탁월 : ㉠, ㉡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 ㉡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 ㉡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 ㉡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 ㉡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판단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과 직접적·구체적 관련이 있는지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지
- 성과지표 측정에 사용된 근거자료에 신뢰성·타당성*이 있는지

* 예) 수요자 만족도가 성과지표인 경우,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의 적정성·편향되지 않은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의 객관성 중요

- 성과지표가 정책효과성까지 감안하여 설정되었는지
- 성과지표 설정 전 충분한 사전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사례연구, 통계파악,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

㉡ 목표치 설정의 논리성 및 적극성 판단

-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고 과거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수년간(2~3년) 실적치 추세를 보았을 때 적극적 목표인지,
-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신규사업인 경우)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 목표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목표치 설정 적극성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기준은 이하의 [참고] 참조

평가근거/
자료

- 기관별 시행계획 성과지표 및 설정 근거 자료 등

【참고】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판단기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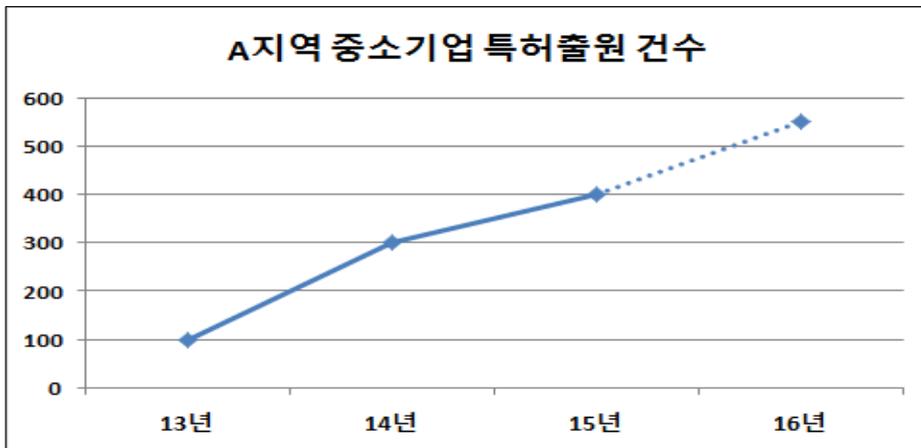
※ 이하의 측정기준은 평가단 및 피평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평가는 전반적 정책추진 상황 및 정책환경,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Ⅰ 평가대상 과제와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기존정책이 있는 경우

①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존재하는 경우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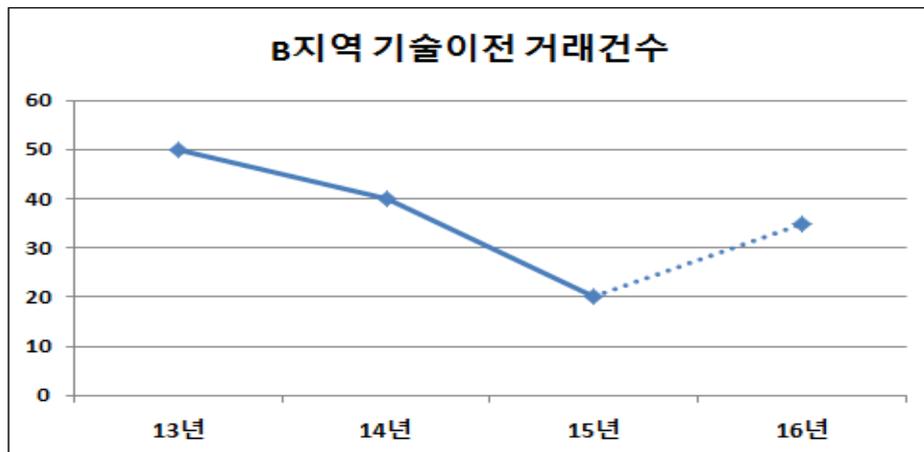
- 전반적 추세치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A지역 중소기업 특허출원 건수



* '13~'15년, 2년간 실적 증가 건수의 평균 $[(200\text{건}+100\text{건})/2=150\text{건}]$ 만큼 전년대비 목표실적을 상향하여 설정(400건+150건=550건)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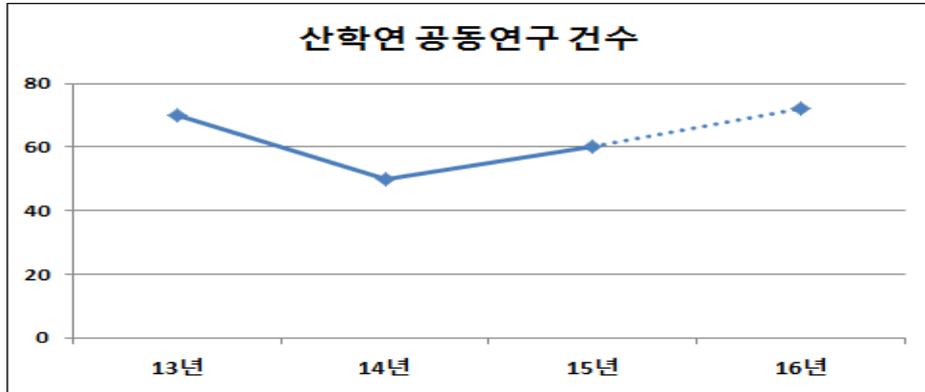
- 최근 수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B지역 기술이전 거래건수



* 3년 연속 실적 하락 상황에서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건수 $[(50\text{건}+40\text{건}+20\text{건})/3= \text{약}37\text{건}]$ 로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등락한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가상적 예시) 산학연 공동 연구 건수



* 최근 3개년 등락 변화추세에서 상승국면인 '13년~'15년의 증가율(20%)에 맞추어 '16년도 목표치를 설정하면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단,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에는 3개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적극적 목표치로 인정

- ② 실적치가 2개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인 경우는 상승추세치 반영 시, 하향국면인 경우는 둘 중 높은 실적치 수준으로 설정 시 적극성 인정
- ③ 실적치가 전년도만 있는 경우, 목표치를 전년대비 10% 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적극성 인정

※ 이미 수년 간 상당한 실적을 쌓아서 추세선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예: 시장수요가 포화상태 등), 해당기관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인정

② 신규사업 등 최근 연도의 실적치가 전혀 없는 경우

-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자료,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③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인정
- * 단순히 “법률안 국회 제출 여부” 등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하며, 난이도가 높고 '16년에 신규로 추진한 법률 제·개정 등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④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국제평가지수 등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 설정도 적극성 인정

평가기준

1-3. 정책추진체계 및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 (10점)

측정방법
및 기준

- 정책추진·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구축되었는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이 적절히 구성·운영되었는지, 인적·물적자원의 확보 및 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부되었는지 여부

- ① 정책추진·전달체계와 전담조직의 구성 및 인력의 합리적 설계·구축
- ②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된 정도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① 정책추진·전달체계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의 합리적 설계·구축

- 정책추진·전달체계가 정책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볼 때, 효율적·합리적으로 설계·구축되어 있는지
- 중앙행정기관과 하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적정한지
- 민간업무 위탁 여부 및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지정 여부
- * 조직의 범위는 하위운영 기관, 지자체, 민간(자문위원회), 관련 센터 등 포함

②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된 정도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확보하였는지
-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시기에 관련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였는지
- 관련 자원이 정책효과성, 우선순위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원분담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인력투입을 모두 고려하고, 재정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인력투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판단

평가근거/
자료

- 정책추진체계, 담당조직 및 인력현황 설명자료, 추진지침 등
- 최근 수년간 예산편성 및 전담인력 지정 추이, 대상별·분기별 예산 지출 현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배분 자료 등

(2) 정책추진 효율성 (2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 2-1.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유관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충실하게 운영한 정도와 그 성과</p> <table border="1" data-bbox="406 510 1407 725"> <tr> <td colspan="11">①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td> </tr> <tr> <td colspan="11">② 유관기관·정책 관련 협의 성과</td> </tr> <tr> <td colspan="2">탁월</td> <td colspan="2">우수</td> <td colspan="3">보통</td> <td colspan="2">미흡</td> <td colspan="2">저조</td> </tr> <tr> <td>10</td><td>9</td><td>8</td><td>7</td><td>6</td><td>5</td><td>4</td><td>3</td><td>2</td><td>1</td><td>0</td> </tr> </table> <p>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p>①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p> <p>* 유관기관 : 해당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기관이나, 유사·연계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을 의미</p> <p>- 유사·연계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 등을 공유하여 정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p> <p>- 협조체계 구축 시 해당기관의 역할, 참여활동 수준, 정책적 불협화음에 대한 언론보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p> <p>② 유관기관 및 정책 관련 협의 성과</p> <p>- 관련 정책의 통합 결정, 정보공유를 통한 중복 예방, 정책연계 강화 등 협의결과 구체적 성과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p> <p>* 성격상 연계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p> <p>* 관련 기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의 연계 및 협조체계도 구축 또는 조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p> | ①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 | | | | | | | | | | ② 유관기관·정책 관련 협의 성과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①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유관기관·정책 관련 협의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근거/ 자료 | ○ 연계·협조체계 구축현황 근거자료, 간담회 개최 등 협의 실적, 검토·반영 결과자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2-2. 정책 소통 및 홍보, 교육의 충실성 (10점)

측정방법
및 기준

- 대국민 소통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는지,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①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 및 홍보
- ②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①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홍보

- 정책수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적절한 피드백 조치를 하였는지
- 효과적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내용을 적기에 홍보하였는지
- 실제 보도실적이 우수하고, 긍정적인 여론의 반응을 이끌어 냈는지
- 비판적·부정적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조치를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②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 대상 교육

- 내부 직원 및 외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는지 판단

* 여론조사·전문가 회의, 워크숍·세미나·초청강연, 온라인 홍보, 신문·방송 보도, 홍보 간행물 발간 등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실효성 있는 소통을 했는지 고려

평가근거/
자료

- 여론조사 결과, 피드백 실시 근거, 보도자료, 기사내용, 세미나·워크숍 개최 계획 등
- 교육수행 실적

(3) 정책 모니터링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기준 | 3-1. 추진일정 충실성 및 상황변화 대응성 (1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과제별 추진계획상 일정을 준수하였는지,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p> <table border="1" data-bbox="422 506 1425 712"> <tr> <td colspan="11">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td> </tr> <tr> <td colspan="11">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td> </tr> <tr> <td colspan="2">탁월</td> <td colspan="2">우수</td> <td colspan="3">보통</td> <td colspan="2">미흡</td> <td colspan="2">저조</td> </tr> <tr> <td>10</td><td>9</td><td>8</td><td>7</td><td>6</td><td>5</td><td>4</td><td>3</td><td>2</td><td>1</td><td>0</td> </tr> </table> <p>탁월 : ①, ② 모두 우수한 수준 우수 : ①, ② 1개는 우수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보통 : ①, ② 모두 통상적 수준 미흡 : ①, ② 1개는 미흡하나, 1개는 통상적 수준 저조 : ①, ② 모두 미흡한 수준</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p>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 충실하게 완료하였는지 - 추진일정 준수율을 높이고자 의도적으로 추진계획을 지연시킨 사례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p>* 일정준수 정도는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하루만 늦어도 지연’ 식의 기계적 판단을 지양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전반적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인지를 고려하는 정성적 판단 병행</p> <p>* 일정지연이 불가피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가</p> <p>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는지 <p>* 모니터링은 인터뷰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 및 언론의 지적사항 분석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상황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였는지 - 여건·상황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원투입 등을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 | | | | | | | | | | 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①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탁월 | | 우수 | | 보통 | | | 미흡 | | 저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근거/자료 | ○ '15년도 시행계획상 추진계획 및 일정, 추진실적 증빙자료, 여론조사, 간담회, 국회 지적사항 분석자료, 상황변화 분석·대응자료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책성과 및 환류 (40점)

| 평가지표 | 4-1. 성과목표 달성도 (20점) | | | | | | | | | | | | | | | |
|---------------------|---|---------------------|-----|-----|--|--|----|----|----|----|----|-------|-------|------|-----|-----|
| 측정방법 및 기준 | <p>○ 해당 과제의 추진계획 상 성과목표를 실제 달성한 정도</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성과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정도</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탁월</th> <th style="text-align: center;">우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통</th> <th style="text-align: center;">미흡</th> <th style="text-align: center;">저조</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7</td> <td style="text-align: center;">16~13</td> <td style="text-align: center;">12~9</td> <td style="text-align: center;">8~5</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r> </table> <p>-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지표의 평가등급과 연동하여 평가 * 1-2 지표의 평가등급이 '미흡', '저조'인 경우 목표달성도와 관계없이 3점을 감점함</p> <p>탁월 : 목표달성도가 90% 이상~100%이고, 질적으로도 매우 충실 우수 : 목표달성도가 80% 이상~9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충실 보통 : 목표달성도가 70% 이상~80% 미만이고, 질적으로 보통 미흡 : 목표달성도가 60% 이상~7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부실 저조 : 목표달성도가 6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매우 부실</p> <p>*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p> <p>㉡ 추진계획 대비 성과목표의 실제 달성 정도 판단</p> <p>*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를 토대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등 선행조건, 달성된 목표의 질적 충실성, 목표달성과 직결된 외생적 변수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p> <p>- (정량적 판단) 당초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비율</p> <p>*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 비율을 산정</p> <p>* 단,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그 지표는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p> <p>*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정성' 지표의 평가등급과 연동하여 평가</p> <p>예) 과제A(성과지표 a,b) : 1-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등급이 '미흡'이고 성과지표 간 가중치가 각각 50%일 때,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100%×0.5+50%×0.5)=75% ⇒ 75%는 4-1. 성과목표 달성도 '보통'(12~9점)에서 3점을 감점한 9~6점 범위에서 점수 부여</p> | ㉠ 성과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정도 | |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20~17 | 16~13 | 12~9 | 8~5 | 4~0 |
| ㉠ 성과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정도 | | | | | | | | | | | | | | |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 | | | | | | | | |
| 20~17 | 16~13 | 12~9 | 8~5 | 4~0 | | | | | | | | | | | | |

| | |
|---------|--|
| | <p>*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 비계량적인 경우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 입법 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p> <p>– (정책 성숙도) 현재 사업추진 방식이 지식재산 중장기 로드맵의 단계별 정책목표와 부합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학계·전문연구기관 등의 평가, 국민·기업·언론 등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p> <p>* 예) 초기(인력, 예산, 시설, 법·제도 등 인프라 구축), 중기(정책추진 최적화 등 시스템 고도화), 성숙기(거버넌스 등 활용,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단계별 정책추진 적정성 평가</p> |
| 평가근거/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제출 실적자료,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근거자료(필요 시 관련 외생변수에 대한 소명자료 포함) 등 ○ 지식재산 중장기 발전계획 |

평가기준

4-2. 정책 효과성 (15점)

측정방법
및 기준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실제 발생한 정도

㉠ 정책의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저조 |
|-------|-------|-----|-----|-----|
| 15~13 | 12~10 | 9~7 | 6~4 | 3~0 |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책의 긍정적 파급효과 발생 정도 판단

-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생했는지
-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는 없었는지
- 해당 과제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해당 과제의 성과가 관련 분야에 활용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량적 판단 : 시장 영향력(투자 증가, 고용창출 수, 인프라 확대 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문가 설문·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판단

* 정성적 판단 : 학계 및 전문가 의견·논문, 산업계·시민단체 의견, 국제사회 반응, 언론보도 등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

* 실적 제출 시까지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기관에서 향후 일정한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여 평가

평가근거/
자료

- 기관제출 실적자료, 정책효과의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근거자료 등

평가기준

4-3. 개선성과 우수성 (5점)

측정방법
및 기준

○ '14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 노력 및 성과

| ①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과제 개선노력 및 성과 | | | | | |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 5 | 4 | 3 | 2 | 1 | 0 |

* 동일 등급내 점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①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과제 개선 노력 및 성과

- 전년도 평가결과, '향후과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반영 여부

- 수립된 계획에 의거하여 실질적 활동을 하였는지

- 해당 과제활동에 따라 구체적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정량적으로 판단

* 정량적 판단 : 과제개선을 위한 투입예산/인력, 성과달성내용과 연계된 성과지표, 과제개선에 따른 정책영향력 (투자 증가, 고용 창출 수, 인프라 확대 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 정성적 판단 : 과제개선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모니터링 활동 내용의 체계성, 달성된 성과내용의 유사 사업/기관 대비 우수성 등

* 과제개선을 위한 활동 및 노력이 구체적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점부여

평가근거/
자료

○ 기관제출 실적자료, 정책 개선 사항 및 개선성과에 대한 계량적·비계량적 근거자료 등

[부록 3]

'17년 중앙부처 추진과제 현황

| 전략 | 기관 | 핵심과제 | 세부과제 | | |
|----|------------------------------|-------------------------------------|--|--|--|
| 1 | 과기부 | 1.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 1-1. 대형 R&D 사업 IP 성과관리 강화 1-2. R&D 과제에서 IP-R&D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 | | |
| | | 2.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 2-1.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 강화 | | |
| | | 3.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 3-1. 출연(연) IP 경영전략 도입 3-2. 출원 전 심사 및 미활용특허 관리 강화 | | |
| | | 4. IP-기술 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 4-1. IP 기술의 거래·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후속 지원 확충 | | |
| | 산업부 | 1.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 1-1. 표준특허 전략이 필요한 분야에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 | |
| | | 2. IP-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 2-1-1. IP-기술거래 세제 혜택 확대 2-1-2. 기술거래 수수료 가이드라인 도입 | | |
| | | | 2-2-1. R&D재발견 2-2-2. 정부R&D 성공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정책펀드 운영 | | |
| | | | 3-1. 기술가치평가 | | |
| | 3. 민간 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 | | | |
| | 복지부 | 1. 보건산업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인프라 지원 | 1-1. 보건산업 지식재산 정보제공 1-2. 보건산업 기술발굴 전문가 활용지원 1-3. 보건산업 특허 컨설팅지원 | | |
| | | | 2. 보건산업 전담조직의 지식재산 기반 육성 지원 | 2-1. 보건의료 TLO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지원 | |
| | | | 3. 보건산업 지식재산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 3-1. 보건산업 기술중개 활성화 지원 3-2. 보건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3-3. 보건의료 투자협력 기술교류 지원 | |
| | | 금융위 | | 1. 기술신용대출 질적 개선 | 1-1. 은행 자체 기술신용대출 실시 |
| | | | | 2. 기술기반 투자 확대 | 2-1. 기술가치평가 펀드 투자 내실화 2-2. NPEs 역할 강화 |
| | | 특허청 | 1.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 1-1.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 |
| | 2.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 | 2-1. 표준특허 전략이 필요한 분야에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2-2.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 | | |
| | | | 3.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 3-1. 출연(연) IP 경영전략 도입 3-2. 출원 사전심사 및 미활용특허 관리 강화 | |
| | 4. IP-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 | | 4-1. 지식재산 세제개선 4-2.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IP 거래 활성화 4-3. 대학-공공연 및 민간의 IP 사업화 촉진 | |
| | | | 5. 민간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 5-1. 우수특허 보유 스타트업 등에 대한 IP 투자 강화 5-2. 민간 중심의 IP 금융 인프라 확충 | |

| 전략 | 기관 | 핵심과제 | 세부과제 |
|-----------------------------|--|---|--|
| 2 | 과기부 | 5. 중소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 | 5-1. 중소기업에 대한 IP-R&D 지원 확대 |
| | 산업부 | 4. 중소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 | 4-1. 중소기업 지식재산기반 사업화개발 지원 강화(R&BD) |
| | 법무부 | 1.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 | 1-1. 수사기술-인력 고도화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 | | | 1-2.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 | 복지부 | 1. 중소기업 지식재산 기반 성장 촉진 | 1. 지식재산 기반 창업 육성 지원 2. 보건산업 신기술 인증 지원 |
| | 공정위 | 1. 하도급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침해 근절 | 1-1.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예방 강화 |
| | | | 1-2.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보호 활동 여건 조성 및 역량 강화 |
| | 특허청 | 6. 중소·벤처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 | 6-1. 중소기업에 대한 IP-R&D 지원 확대 |
| | | | 6-2.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
| | | | 6-3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도입 |
| 6-4 중소기업 특허공제사업 도입 | | | |
| 7.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 7-1. 미등록 아이디어·디자인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 | | |
| | 7-2. 중소·벤처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 | |
| 8.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 8-1. 직무발명 범위 확대 및 정당한 보상 문화 정착 | | |
| | 8-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관계 및 이익배분 체계 합리화 | | |
| 중기청 | 1.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 1-1.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정비 | |
| 3 | 산업부 | 5.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 5-1. 글로벌기술사업화(GCC/EEN) |
| | 외교부 | 1. 현지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 | 1-1. 재외공관의 현지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 강화 |
| | | 1. 특허 분야 국제 이니셔티브 정책 공조 강화 | 1-1.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 지재권 이슈 적극 대응 |
| | 농림부 | 1. 생물·유전자원 관련 新 국제규범 대응 | 1-1. 수의유전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체계 강화 |
| | | | 1-2.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 | | 1-3. 생물·유전자원의 발굴 및 확보와 지식재산 창출지원 |
| | | | 1-4. 산림유전자원 보존·관리 표준화 |
| | | | 1-5.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교류 강화 |
| | 환경부 | 1. 생물자원 발굴·확보와 지식재산 창출지원 | 1. 생물자원의 전략적 발굴·확보 체계 강화 |
| | | | 2. 생물자원의 보존·관리 표준화 |
| | | | 1. 생물자원의 가치 발굴 확대 |
| | 2. 생물자원 활용 기반 구축 및 지원서비스 강화 | 2.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원서비스 강화 | |
| | | 3. 생물자원 활용 제도 개선 및 국민이해 확대 | |
| | 3. 생물자원 관련 국내·외 협력 및 대응 강화 | 1. 생물자원 보존·활용을 위한 국내협력 강화 | |
| | | 2.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 해수부 | 1. 해양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확보를 위한 해역별 특화체제 구축 | 1. 동아프리카연안 해양생명유전자원 연구·확보체제 구축 | |
| | | 2. 러시아 극동 및 북극 인근 해역 해양생명유전자원 연구·확보 체제 구축 | |
| 특허청 | 9.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 9-1.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IP 종합전략 지원 | |
| | | 9-2. 글로벌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 |
| | | 9-3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 강화 | |
| | | 9-4 해외에서의 한류 IP 보호 강화 | |
| | | 9-5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 |
| 10. IP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10-1. 글로벌 심사협력 강화 | | |
| | 10-2. 개도국에 IP 행정서비스 및 IP-ODA의 확대 | | |
| | 10-3. IP 국제기구 유치 및 글로벌 IP 이니셔티브 주도 | | |
| 중기청 | 1. 해외 진출 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 | 1-1. 글로벌 강소기업 R&D 전 주기 IP전략 수립 | |
| | | 1-2. World Class 300 R&D 전주기 IP 전략 수립 | |
| 관세청 | 9.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강화 | 3. 지식재산 침해물품 국경조치 내실화 | |

| 전략 | 기관 | 핵심과제 | 세부과제 |
|---------------------------------|-------------------------------|---------------------------------|----------------------------------|
| 4 | 문체부 | 1-1. 디지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선진화 | 1-1-1.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 |
| | | | 1-1-2.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 기능 고도화 |
| | | 1-2. 해외 저작권의 체계적 보호 지원 | 1-2-1. 민·관 협력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
| | | | 1-2-2. 저작권 국제 협력 강화 |
| | | 1-3.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환원하는 환경 구축 | 1-3-1. 창작자 권익보호 제도 강화 |
| | | 2-1. 온라인 저작물 이용 시스템 강화 | 2-1-1. 편리한 저작권 이용 서비스 강화 |
| | | | 2-2. 자유이용(공공, 공유) 저작물 이용 활성화 |
| | | 2-3. 저작물 유통·관리 환경 개선 | 2-3-1.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활용 확대 |
| | | 3-1. 한류 콘텐츠의 진출국가 다변화 | 3-1-1. 한류콘텐츠의 진출국가 다변화 지원 |
| | | | 3-1-2. 해외 저작권 지원 거점 정비 |
| | | 3-2.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의 확산 촉진 | 3-2-1. 해외 저작권 합법유통 확대 지원 |
| | | | 3-2-2. 한류콘텐츠의 해외 확산 촉진 지원 |
| | | | 3-2-3. 해외에서 한류콘텐츠의 확산 촉진 |
| | | 4-1. 양질의 차세대 콘텐츠 창출 지원 | 4-1-1.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체험존 조성 |
| 4-2.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치평가·금융지원 확대 | 4-2-1. 콘텐츠가치평가제도 활성화 | | |
| | 4-2-2. 문화산업완성보증 신규보증 확대 | | |
| 5 | 문체부 | 5-1.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저작권 법제도 정비 | 5-1-1.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미래전략 수립 |
| | | 5-2. SW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 5-2-1. 능동적 SW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
| | | | 5-2-2.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 | | 6-1. 저작권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 6-1-1. 저작권 인식 저변 확대 |
| | 6-1-2.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 | |
| | 6-2.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6-2-1. 저작권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강화 | |
| | | 6-2-2. 생활 속 저작권 홍보 강화 | |
| | 농림부 | 20. 식물 신품종의 개발 활성화 및 보호 강화 | 20-1.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품종 개발 지원강화 |
| | | | 20-2. 품종보호제도 운영 효율과 및 분쟁 대응력 강화 |
| | 해수부 | 1. 신품종 개발지원 강화 및 수출전략품목 육성 | 1. Golden Seed 프로젝트 |
| 2. 갈조류 품종개발 및 양식방법 연구 | | | |
| 복지부 | 2. 종자산업 및 양식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1.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육성 | |
| | | 1.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 |
| 특허청 | 1. 보건산업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인력 양성 | 2.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지원 | |
| | | 3. 보건산업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지원 | |
| 특허청 | 11.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 11-1. 신기술 IP에 대한 보호체계 정립 | |
| | | 11-2.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SW 특허 보호체계 개선 | |
| | 12. 특허권의 신뢰성·안정성 제고 | 12-1. 특허 무효율 저감을 위한 고품질 심사 실현 | |
| | | 12-2. IP 분쟁해결 시스템의 선진화 | |
| | 13.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 13-1.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
| | 14. IP 인적기반 확충 | 14-1. 초·중·고 학생 대상 발명·특허 소양교육 강화 | |
| 14-2.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 조성 | | | |

[부록 4]

'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자료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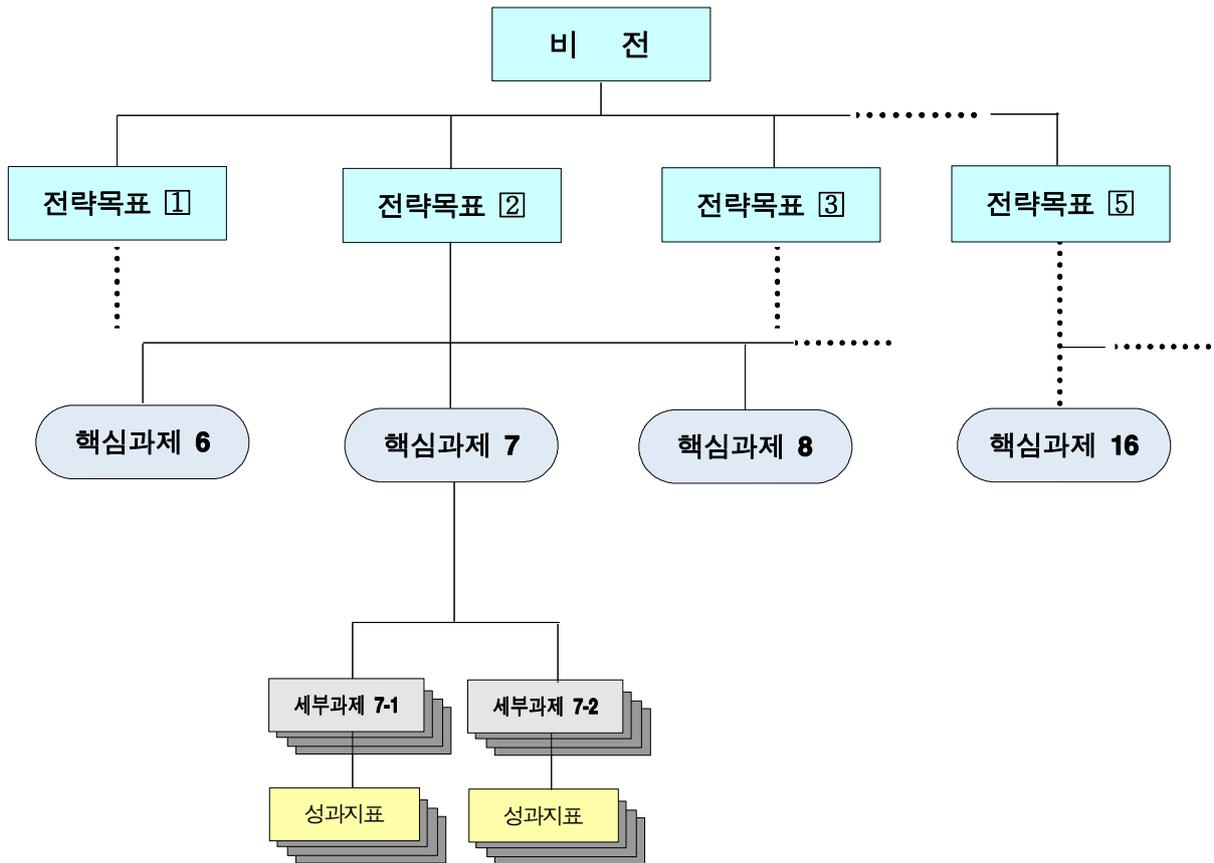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18. 1.

기관명

I 2017년도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한글:HY헤드라인M 17pt, 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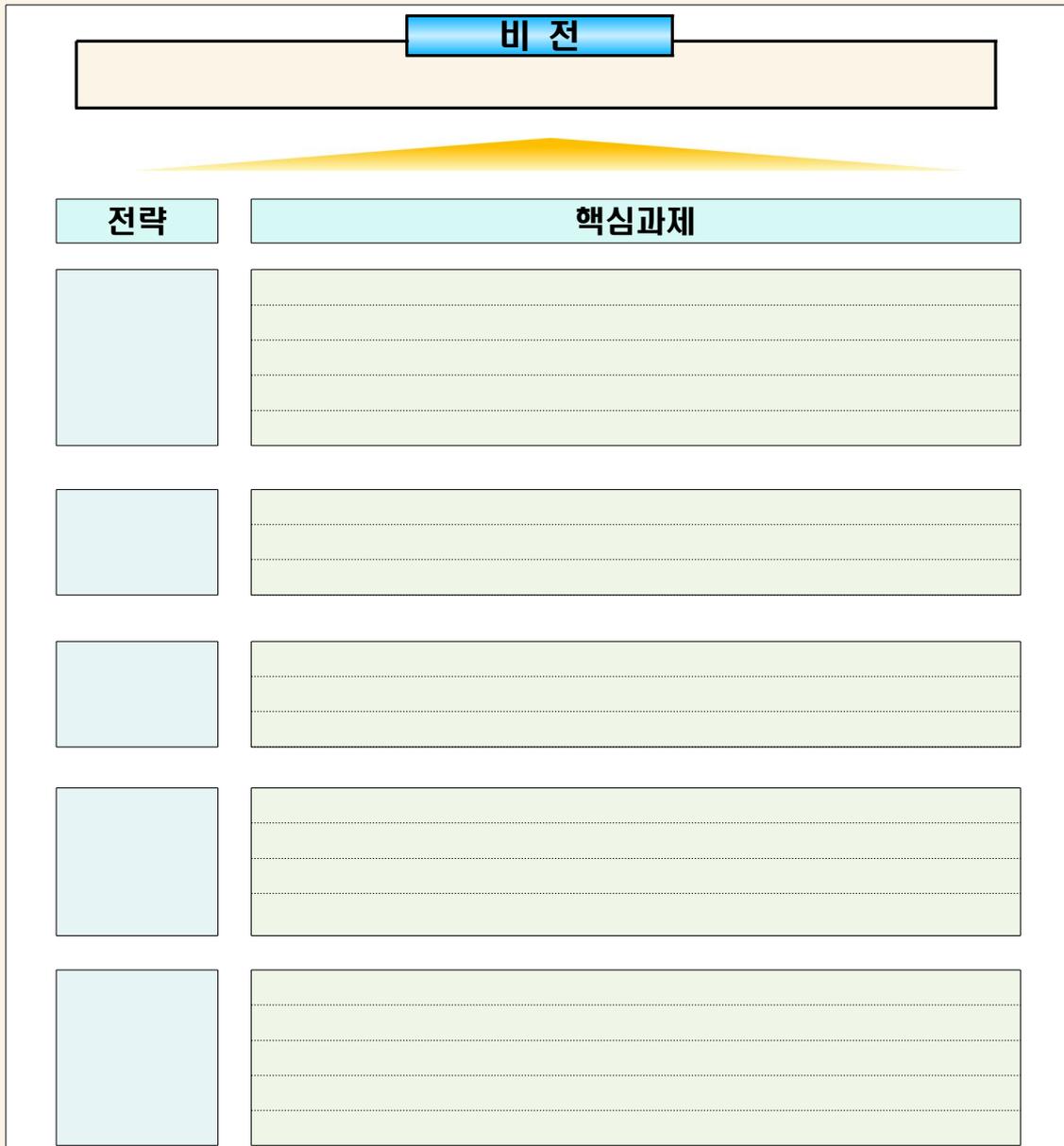
<기제출한 '17년도 기관별 자체 시행계획 체계를 활용 >

- 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 핵심과제를 포함하여 비전→전략→핵심과제 간의 체계를 도식화하여 제시
(그림 또는 표 형태로 기관사정에 맞게 작성하되 전략이 많아 한 페이지에 담기 어려운 경우 분야별로 개별 도식 작성 가능)
- '비전'은 소속기관이 장기적인 목표아래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의미하며, 알기 쉽고 종합적이며 고무적인 표현으로 제시하되 과도한 수사적 표현은 지양
- '전략',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는 기본계획을 참고하되 기관 특성에 맞도록 적절히 변경하거나 조정

○ 번호는 기본계획의 번호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체계에 따름

- 기본계획상의 전략목표 ①, ③, ⑥번만이 소속기관과 해당한다면 ①, ③, ⑥이 아닌 ①, ②, ③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
- 다만, 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위해 '목표 및 과제 현황'에서 관련되는 기본계획상의 세부과제번호를 기재

예시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예)



2

목표 및 과제 현황 (한글:HY헤드라인M 17pt, 진하게)

(단위 : 개)

| 전략 | 핵심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 성과지표 |
|----|------|------|--------------|
| | | | |

| 전략 | | 비고 | 기본계획상의 과제번호 |
|--------------|--|----|----------------|
| 핵심과제 | 세부과제 | | |
| ① 전략명 | | | |
| 1. 핵심과제명 | 1-1. 세부과제명 | 재정 | 1-1 |
| | 1-2. 세부과제명 | 정책 | 2-2 4-1 |
| 2. 핵심과제명 | 2-1. 세부과제명 | 재정 | 1-1 |
| | 2-2. 세부과제명 | 정책 | 2-2 4-1 |
| (중략) | | | |
| ② 전략명 | | | |
| 6. 핵심과제명 | 6-1. 세부과제명 | | |
| | 6-2. 세부과제명 | | |
| (신규) | 당초 시행계획에 미포함되었으나,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식재산 정책 추진 실적 | | |

<기제출한 '17년도 기관별 자체 시행계획의 과제현황을 활용>

- 비고란에는 재정사업인 경우 '재정', 정책과제인 경우 '정책'으로 표기 (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인 혼재된 경우에는 '재정'으로 표기)
- 기본계획 상의 과제번호는, 해당되는 모든 과제번호를 기재
- '17년 계획에 없었던 과제이나 신규로 추진한 과제는 추가 가능

예시

| 전략 | | 비고 | 기본계획상의 세부과제번호 |
|------------------------------------|---------------------------------------|----|------------------|
| 핵심과제 | 세부과제 | | |
| ①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 | | |
| 1. 지식재산 전략과 R&D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 1-2. | | |
| | 1-2. | | |
| 2.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 2-1. 표준특허 전략이 필요한 분야에 R&D-특허-표준 연계 추진 | 재정 | .. |
| | 2-2. 국제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 강화 | | .. |
| | | | |

I

2017년도 정책추진 성과

1

그간의 정책 여건 (한글:HY헤드라인M 17pt, 진하게)

- (한글:휴면명조 15pt)

-

*

- 최근 수년 간 해당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사업의 기초 및 성과를 핵심과제별 성과지표 등을 활용하여 종합 정리
- 특히, '17년 연초 대비 환경 변화 등 정리

2

2017년도 정책추진 성과 (한글:HY헤드라인M 17pt, 진하게)

- (한글:휴면명조 15pt)

-

*

- '17년에 해당기관이 추진한 지식재산정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기술하거나 추진 과제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낸 과제를 2~3개 선정하여 기술
 - '17년 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 성과 및 효과와 기존 문제를 해결한 결과 등을 기술하되, 구체적·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사례 중심으로 기술
- * 예시 : 산출물, 국민여론, 국회 평가, 언론보도결과, 사회지표 등 사례 제시

Ⅲ 세부 추진실적

<기제출한 '17년도 기관별 자체 시행계획의 추진 내용을 일부 변형>

- 해당 기관의 '2017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전략-핵심과제-세부과제 체계를 활용하여 추진실적 기술

1 전략명 (한글:HY헤드라인M 17pt, 진하게)

1. 핵심과제명 (한글:HY헤드라인M 15pt, 진하게)

<기제출한 '17년도 기관별 자체 시행계획의 핵심과제 내용을 활용>

- 핵심과제는 2017년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 핵심과제는 세부과제보다 상위수준에서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수준

주요내용 (한글:휴면명조 15pt, 진하게)

- (한글:휴면명조 15pt)

-

*

1-1. 세부과제명 (한글:HY헤드라인M 15pt, 진하게)

- 세부과제는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별 정책 또는 사업 단위를 의미
- 세부과제별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기대효과, 추진일정 달성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작성

□ 추진배경 및 목적 (한글:휴면명조 15pt, 진하게)

- (한글:휴면명조 15pt)

-

*

- 사업 추진의 근거(법령, 규정, 지침, 조례·규칙 등) 또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주요 내용 및 추진 성과 (한글:휴면명조 15pt, 진하게)

- (한글:휴면명조 15pt)

-

*

< 작성시 착안사항 >

- '17년도 과제 추진 내용을 기획-집행-모니터링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정책 추진에 따른 정책성과 및 효과와 기존 문제를 해결한 결과 등을 기술하되, 구체적·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례 중심

* 예시 : 산출물, 국민여론, 국회 평가, 정책담당자 자평, 언론보도결과, 사회 지표 등 사례 제시

□ '17년도 추진일정 달성도(한글:휴면명조 15pt, 진하게)

| 추진내용 | 당초 추진일정 | | | | 달성 여부 |
|------|---------|-----|-----|-----|-------|
| | 1/4 | 2/4 | 3/4 | 4/4 | |
| · | | | | | 달성 |
| - | ○ | | | | 미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지표 달성도(한글:휴면명조 15pt, 진하게)

| 성과지표 | 실적 | | | 목표치 | 실적치 |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14 | '15 | '16 | '17 | '17 | | | |
| 성과지표명 | | | | 13 | 15 (달성) | 목표치 산출의 구체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 | | |

□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한글:휴면명조 15pt, 진하게)

○ (한글:휴면명조 15pt)

-

*

< 작성시 착안사항 >

- ① 평가과제 중 성과 달성이 어렵거나 미흡한 세부과제(관리과제)를 기술
 - * 추진계획 미이행, 추진일정 지연 또는 목표 달성 곤란한 과제
 - *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으로 인한 정책효과 저하 과제 등
- ② 미흡 사유
 -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인한 정책 지연
 - * 홍보 부족 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야기
 - * 법령 제개정 지원
 - * 기타 국민여론, 국회평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되었던 부정적 사례 등
- ③ 문제점(한계)으로 서술한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박스에 제시
 - 향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

추가-1. 추가 과제명 (한글:HY헤드라인M 15pt, 진하게)

- 당초 시행계획에 미포함되었으나,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식 재산 정책 추진 실적

□ 추진배경 및 목적 (한글:휴면명조 15pt, 진하게)

- (한글:휴면명조 15pt)

-

*

- 사업추진의 근거(법령, 규정, 지침) 또는 환경변화 등에 따른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

□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 (한글:휴면명조 15pt, 진하게)

- (한글:휴면명조 15pt)

-

*

- 지식재산 고유의 제도·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아닌 특정 과학·기술·컨텐츠 분야에서의 기초·응용·개발을 위한 R&D 사업의 경우 사업의 대상과 구체적 내용은 비교적 간략히 작성하고, 지식재산 관점의 R&D 관리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추진실적 작성 시 구체적인 시기/장소 등을 함께 명기

□ 기대효과(한글:휴면명조 15pt, 진하게)

○

-

-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사업의 결과물이 기술특허, 콘텐츠 등 지식재산권화 될 가능성 및 시장에서의 사업화·기술이전 가능성 및 국부 및 고용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적시

[부록 5]

'17년 평가지표 및 점검 기준 [중앙행정기관]

1. 추진일정 달성 [10]

| | | |
|----------------------|---|----------------|
| 계획된 정책 일정의 성공적 집행 여부 | | 평가결과 ()/10 |
| 평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 충실하게 완료하였는지 여부 ▲ 추진 상황을 지속적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적절한 대응 여부 | |
| | | |

2. 성과지표 달성 [10]

| | | |
|------------------|--|----------------|
| 정책추진 성과 지표 달성 여부 | | 평가결과 ()/10 |
| 평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치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되 목표치의 적절성 등 질적 충실성에 근거하여 평가 ▲ 미흡이더라도 노력이 구체적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 ▲ 선정된 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

3. 우수성 및 파급효과 (50)

| 정책성과의 우수성 및 정책 효과성 | | 평가결과 |
|--------------------|---|--------|
| | | ()/50 |
| 평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성된 성과내용의 유사 사업/기관 대비 우수성 및 파급효과(매출, 고용창출 등) - IP 권리화,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 및 모범 사례 여부 - 창출·보호·활용 분야의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파급효과 | |
| | | |

4. 추진체계 및 수요 대응성 (30)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정책 수요 대응성 | | 평가결과 |
|-----------------------|--|--------|
| | | ()/30 |
| 평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내용 및 추진방식, 수혜대상의 적정성 여부 ▲ 부처 간 협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전문가 활용 여부 ▲ 국민적 체감 증진 및 민원에 충분히 대응했는지 여부 | |
| | | |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
|-----|--|
| 착안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치 조정 적절성 ▲ 핵심 기술력 및 핵심 지식재산 확보 ▲ 과제수행 결과의 활용 및 확산 방법 |
| | |

【 종합 평가의견 】

-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가의견 기재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를 요약정리 하되, 타 기관 확산이 필요한 우수사례의 경우 잘된 점을 기재, 향후 개선이 필요한 미흡사례의 경우 개선필요 사항 및 방향 기술
- ▶ 평가지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해당 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평가과제의 성공적 추진 및 향후 보완을 위한 정책제언 등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

| |
|------|
| 종합의견 |
| |

| |
|-----------|
| 기타 정책제언 등 |
| |

'17년 평가지표 및 점검 기준 [지방자치단체]

1. 추진일정 달성 [10]

| | | |
|----------------------|---|--------------------|
| 계획된 정책 일정의 성공적 집행 여부 | | 평가결과 ()/10 |
| 평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 충실하게 완료하였는지 여부 ▲ 추진 상황을 지속적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 적절한 대응 여부 | |
| | | |

2. 성과지표 달성 [10]

| | | |
|------------------|--|--------------------|
| 정책추진 성과 지표 달성 여부 | | 평가결과 ()/10 |
| 평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치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되 목표치의 적절성 등 실적 충실성에 근거하여 평가 ▲ 미흡이더라도 노력이 구체적이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 ▲ 선정된 성과 지표의 적절성 | |
| | | |

3. 우수성 및 파급효과 (30)

| | | |
|--------------------|---|----------------|
| 정책성과의 우수성 및 정책 효과성 | | 평가결과 ()/30 |
| 평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성된 성과내용의 유사 사업/기관 대비 우수성 및 파급효과(매출, 고용창출 등) - IP 권리화, 기술이전, 사업화 기여 및 모범 사례 여부 - 창출·보호·활용 분야의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파급효과 | |
| | | |

4. 시장 수요 대응 (20)

| | | |
|---|---|----------------|
| 4-1: 해당 사업 분야 시장·기술 부문의 주기적 조사·분석 및 전략 수립 수행 여부 | | 평가결과 ()/10 |
| 평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IP 활동을 위한 적극적 시장·기술조사 수행 여부 - 지역보유기술IP와 제품의 연계전략 및 핵심 IP 확보 계획 수립 지원 - 지역보유 IP의 강·약점 파악을 위한 내·외부 전문 인력 활용 여부 ▲ 기업 등 지역연구 주체의 IP 니즈 파악 및 수요반영 체계 구축 여부 ▲ 시장·특허조사 결과의 유관기관 공유 여부 | |
| | | |

| | | |
|------------------------------------|---|----------------|
| 4-2: 수요자 관점에서의 홍보 및 적극적인 마케팅 수행 여부 | | 평가결과 ()/10 |
| 평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IP 및 IP 정책에 대한 홍보 여부 ▲ 기술이전 설명회, 투자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의 마케팅활동 여부 | |
| | | |

5. 프로세스 및 인적자원 관리 [30]

| | | |
|------------------------------------|--|----------------|
| 5-1: 지식재산경영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 | 평가결과 ()/10 |
| 평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관련조직이 독립된 전담 조직인가? ▲ IP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변리사 등) 여부 ▲ R&D, IP, 현업 인력에 대한 직무별 지식재산 교육 실시 여부 | |
| | | |

| | | |
|----------------------|---|----------------|
| 5-2: 지식재산 성과 관리의 적절성 | | 평가결과 ()/10 |
| 평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성과물의 체계적(연도별, 기관별, 분야별 등) 관리 여부 ▲ 우수IP 확보기관에 대한 출원 지원, 컨설팅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장려 | |
| | | |

| | | |
|-------------------------------|---|----------------|
| 5-3: 지자체의 IP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 | 평가결과 ()/10 |
| 평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 사업구조변혁(성장기회의 창조, 개발의지, 노력)에 따른 대응능력 ▲ 해외출원 및 보호를 위한 전략적 지원 체계 수립 여부 | |
| | | |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
|-----|--|
| 착안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치 조정 적절성 ▲ 핵심 기술력 및 핵심 지식재산 확보 ▲ 과제수행 결과의 활용 및 확산 방법 |
| | |

【 종합 평가의견 】

-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가의견 기재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를 요약정리 하되, 타 기관 확산이 필요한 우수사례의 경우 잘된 점을 기재, 향후 개선이 필요한 미흡사례의 경우 개선필요 사항 및 방향 기술
- ▶ 평가지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해당 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평가과제의 성공적 추진 및 향후 보완을 위한 정책제언 등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

| |
|------|
| 종합의견 |
| |

| |
|-----------|
| 기타 정책제언 등 |
| |